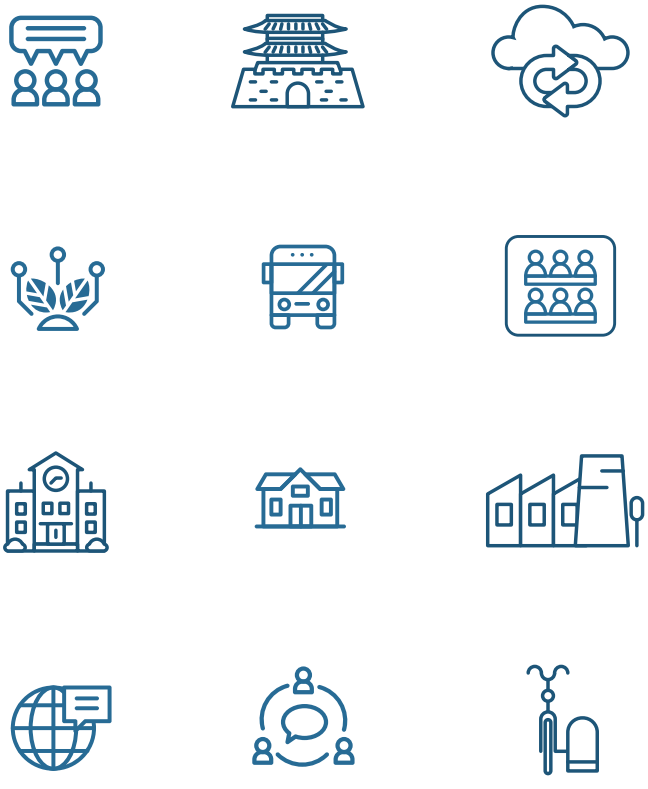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2025-제10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여성가족부] ····· 7

2.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국무총리비서실] ····· 17

3. 주거환경 개선과 자력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 ···· 27

4. AI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AI 선박 분야 [관계부처합동] ····· 33

5.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 38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차도 비교

1. 제주 농(農)케이션 및 남해 런(Learn)케이션 사례를 중심으로 ····· 45

2.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발표 ····· 54

목 차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언어서비스에서 위기가정 발굴까지 [국회입법조사처] ····· 67

2.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자 [전북연구원] ····· 71

3.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활동·학교예술교육활동 및 학교예술 강사 지원 정량 분석 [나라살림연구소] ····· 81

4.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의 역할 [한국교육개발원] ····· 87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사례

1. 원스톱 폐업지원 시 소상공인 개인의 신청편의 제공방안 마련 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99

2.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6

3.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 관리 강화 필요 [교육위원회] ·····120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여성가족부, '25.03.)

◇ 여성가족부의 '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고용·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직면한 **20~39세 청년 한부모가구의 구조적 취약성**을 진단하고 있음. 특히 **유자녀 청년가구 중 한부모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11.1%)**인 **전북자치도**의 현황과 정책 사각지대를 집중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함

1 배경 및 목적

○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20~39세 청년 한부모가구**는 양부모가구에 비해 소득, 고용, 주거 안정성 등 모든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현저히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청년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립은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제임. 특히 **유자녀 청년가구 중 한부모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북자치도의 현황과 취약성을 진단함

2 근거 법률 및 현황

○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주요 근거 법률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며, 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함

○ **국가 정책 동향 및 2026년 예산안 주요 방향**

- **2024년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등) 지원 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었음. 특히,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의 아동양육비를 인상(0~1세 영아 월 35만원 → **월 40만원**)하는 등 취약 청년층 지원이 강화되었음

- **2026년 예산안 주요 방향:** 2024년의 지원 기준 완화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2026년 예산안 등)에도 지원 대상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 **급여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청년 한부모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자립 지원금**을 계층별로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3 주요 내용(요약)

○ 여성가족부의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25.03.발표), 한부모가족은 일반 가구 대비 소득, 주거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여전히 취약성이 높았으며,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을 확인함

항목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근거 및 출처
소득 수준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 소득(488.7만 원)의 **60.3% 수준**이며, 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함.	여성가족부(2024.12.), 「2024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며,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층 취약성	**20~39세 청년 한부모가구**는 양부모가구 대비 **상대적 빈곤율, 낮은 자가 보유율,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 사회·경제적 특성 전반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함.	통계청(2023), 「20-39세 청년 한부모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24년 실태조사
주거 환경	한부모가구의 주된 거주 형태는 보증부 월세(24.9%)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거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요구가 높음.	여성가족부(2024.12.), 「2024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정책 요구	한부모가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원 항목은 **아동 양육비 등 현금 지원**이며, 이어서 **주거 지원**(12.9%) 및 **아이돌봄 서비스**(6.3%) 순으로 나타남.	

※ [참고 1]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요약) 참조

4 시사점

○ 본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의 구조적 취약성(소득, 주거, 고용)이 여전히 심각하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경제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재확인함

○ 특히, **20~39세 청년 한부모가구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과 청년층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 강화**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정책 제언 >> [소관부서 : 여성가족과]

○ 통계청 기준 전북자치도에는 **2023년 60,440명의 한부모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자녀 청년 가구 중 한부모가구 비중이 **11.1%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취약성'에 직면하고 있음

※ 유자녀 **청년가구 중 한부모가구 비중**은 비수도권(8.4%)이 수도권(6.9%)보다 높았으며, **전북(11.1%)이 가장 높고** 제주(9.7%), 서울(6.0%) 순으로 세종(4.4%)이 가장 낮음

※ [참고 2] 2023년 청년(20~39세) 한부모가구 분석 결과(요약) 참조 (통계청, '25.09.)

○ 도는 2023년 기준 60,440명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2025년 자립지원 강화 사업(47억 원 규모)을 통해 확대 양육비를 월 2만 원 인상(한부모 23만 원)하는 등 자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 '25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사업 : 10개 사업, 47,394백만원**

- 확대양육비 월 2만원 인상(한부모 21→23만원, 청소년한부모 35→37만원) 및 자립 지원(14개소)
- 시설 운영(8개소), 주거 지원(19개소),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운영(1개소)

○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기존 정책 보완을 넘어선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현재 분산된 주거, 고용, 금융, 심리상담 등 분산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정보 접근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 강화가 필수적**임. 서비스 연계 효율화를 위해 **서울시·경남도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25~39세 청년 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 특화 정책**을 강화해야 함. 특히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창업 프로그램 운영 시 자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 한부모가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임

○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임이 확인됨.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 중인 학용품비 지원을 넘어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역 특화 바우처(교육돌봄 등)를 도입을 모색해야 함. 이는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여 청년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참고 1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요약) (여성가족부, '25.03.)

1.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현실 (소득과 경제활동)

[소득 및 자산]

: 전체 가구 대비 60.3% 수준인 **월평균 소득(294.6만 원)**과 낮은 순자산액을 제시하여 경제적 취약성을 보여줌

[경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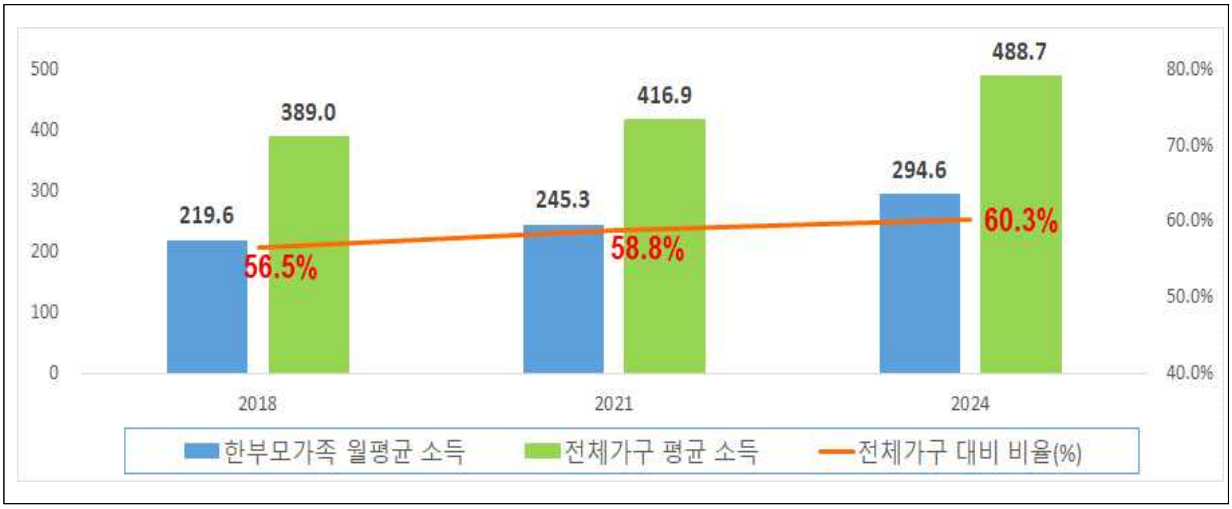
: **높은 고용률(83.9%)**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음(30.8%),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35.1%) 현실을 통해 '고용의 질'이 낮음을 설명함

[근로소득]

: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소득은 244.4만 원**으로 '21년 225.5만 원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 임금근로자 월 평균임금(312.8만 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24.8월)」)에 비해 낮았음

< 평균 소득(가처분 소득) >

(단위: 만원, %)



*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 세금, 사회보험료 등 제외한 가처분 소득

** 전체가구 평균소득: 「2018, 2021,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2. 가장 큰 어려움: 자녀 양육과 비용 문제

[자녀 양육]

: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 '양육비·교육비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자녀 연령별 월평균 양육비 지출액(평균 58.25만 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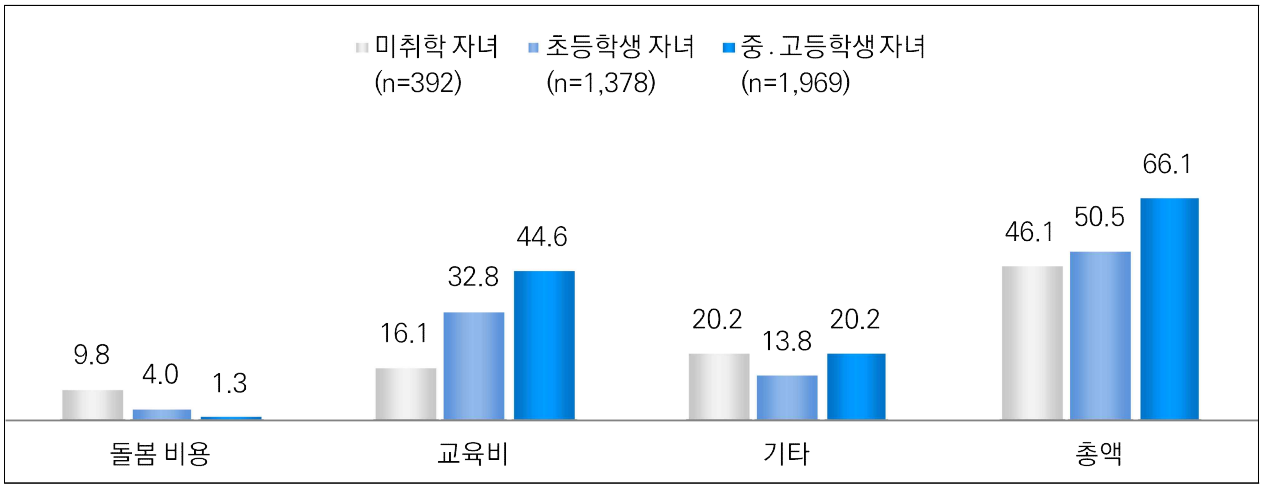
[양육비 이행]

: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핵심 원인인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보여줌. 10명 중 7명(71.3%)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법적 채권 확보 여부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강조함

※ '양육비'는 1인당 미성년 자녀(18세 이하)의 양육을 위한 직접적인 지출 비용을 의미하며, 가족과 함께 지출하는 숙식비 등 공통 지출액은 제외함

< 자녀양육비 항목별 평균 지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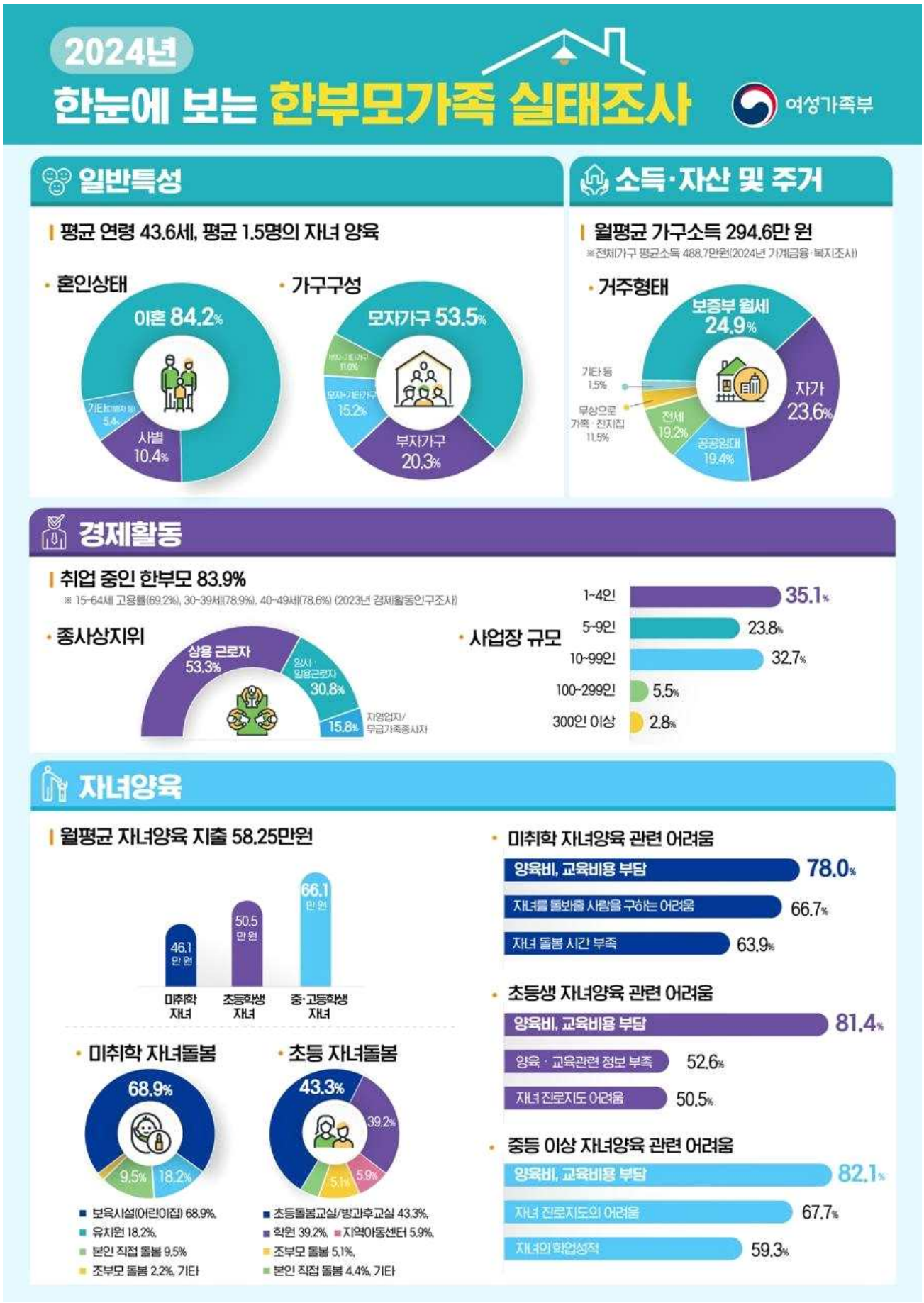
(단위 : 만원)



3. 정책 수요와 나아갈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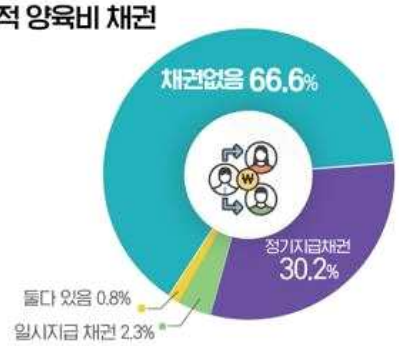
[정책지원 및 수요]

: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1순위**가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66.9%)'**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 또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71.0%)'**을 가장 시급한 제도로 꼽은 것을 연결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2024년
한눈에 보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일반특성
평균 연령 43.6세, 평균 1.5명의 자녀 양육
혼인상태
이혼 84.2%
사별 10.4%
가구구성
모자가구 53.5%
부자가구 20.3%
모자가구 15.2%
소득·자산 및 주거
월평균 가구소득 294.6만 원
※전체가구 평균소득 488.7만원(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거주형태
보증부 월세 24.9%
자가 23.6%
공공임대 19.4%
전세 19.2%
기타 등 1.5%
무상으로 가족·친지집 11.5%
경제활동
취업 중인 한부모 83.9%
※ 15-64세 고용률(69.2%), 30-39세(78.9%), 40-49세(78.6%)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
상용 근로자 53.3%
임시·일용근로자 30.8%
15.8%
사업장 규모
1~4인 35.1%
5~9인 23.8%
10~99인 32.7%
100~299인 5.5%
300인 이상 2.8%
자녀양육
월평균 자녀양육 지출 58.25만원
46.1 만 원
50.5 만 원
66.1 만 원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미취학 자녀돌봄
68.9%
9.5%
18.2%
보육시설(어린이집) 68.9%,
유치원 18.2%,
본인 직접 돌봄 9.5%
조부모 돌봄 2.2%, 기타
초등 자녀돌봄
43.3%
39.2%
5.9%
5.1%
초등돌봄교실/방과후교실 43.3%,
학원 39.2%, 지역아동센터 5.9%,
조부모 돌봄 5.1%,
본인 직접 돌봄 4.4%, 기타
미취학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78.0%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 66.7%
자녀 돌봄 시간 부족 63.9%
초등생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81.4%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 52.6%
자녀 진로지도 어려움 50.5%
중등 이상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82.1%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 67.7%
자녀의 학업성적 59.3%

양육비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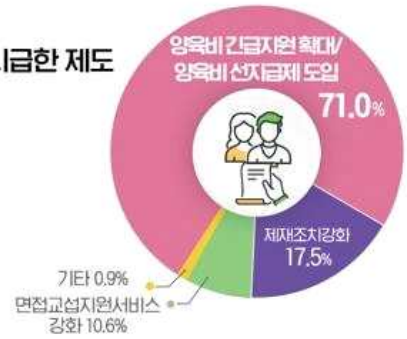
법적 양육비 채권



양육비 채권보유 비율



시급한 제도



양육비 지급 형태

-정기지급 채권 있는 경우



-양육비 채권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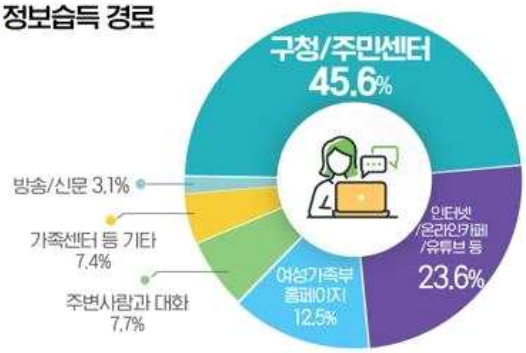
정책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인지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65%이하) 자녀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제공 사업



정보습득 경로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받고 있음' 응답률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18~'22) 중위소득 52% 이하 → ('23) 중위소득 60% → ('24) 중위소득 63%

가장 필요한 정책



참고 2 '23년 청년(20~39세) 한부모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요약 (통계청, '25.09.)

1. 전국 청년 한부모가구의 심각한 격차

: 청년 한부모가구는 양부모가구에 비해 소득, 고용, 주거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임이 확인됨

° **고용 및 소득**: 청년 한부모가구의 취업률(65.0%)은 양부모 가구(86.9%) 대비 **21.9%p 낮은 수준**임. 상시 근로소득 기준 연간 중위소득은 2,733만 원으로 양부모 가구(5,197만 원)의 **절반 수준(47.4% 낮음)에 불과함

° **주거 및 가족 특성**: 주택 소유 비율은 24.0%로 양부모 가구(47.7%) 대비 크게 낮아 주거 여건이 열악함. 또한, 전체 청년 한부모가구 중 여성 가구주 비율이 78.2%에 달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한부모가구 비중(20~24세 27.9%)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2. 전북자치도의 취약성 심화

: 전북 지역은 청년 한부모가구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경제적 지표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취약성 심화' 지역임

° **전국 최고 비중**: **전북** 지역은 **유자녀 청년가구* 중 한부모가구 비중**이 **11.1%**로 전국 평균(7.6%)보다 높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이 비중은 2020년 9.3%에서 **매년 증가 추세**임

* 유자녀 청년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20~39세 청년이 가구주인 일반가구)

° **지역 내 격차 심화**: 전북 청년 한부모가구는 양부모가구 대비 취업률(62.9%)이 22.0%p 낮고, 중위소득(2,534만 원)은 2,060만 원 적음

° **전국 평균 대비 열악**: 전북 한부모가구의 취업률(62.9%)과 중위소득(2,534만 원), 주택 소유 비중(22.4%)은 모두 **전국 한부모가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여기에 평균 자녀수(1.51명)는 전국 평균(1.44명)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더 큰 양육 부담**을 지고 있음

⇒ **시사점**

: 통계청의 2023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20~39세) 한부모가구는 모든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양부모 가구 대비 현저한 취약성을 보였으며, 특히 **전북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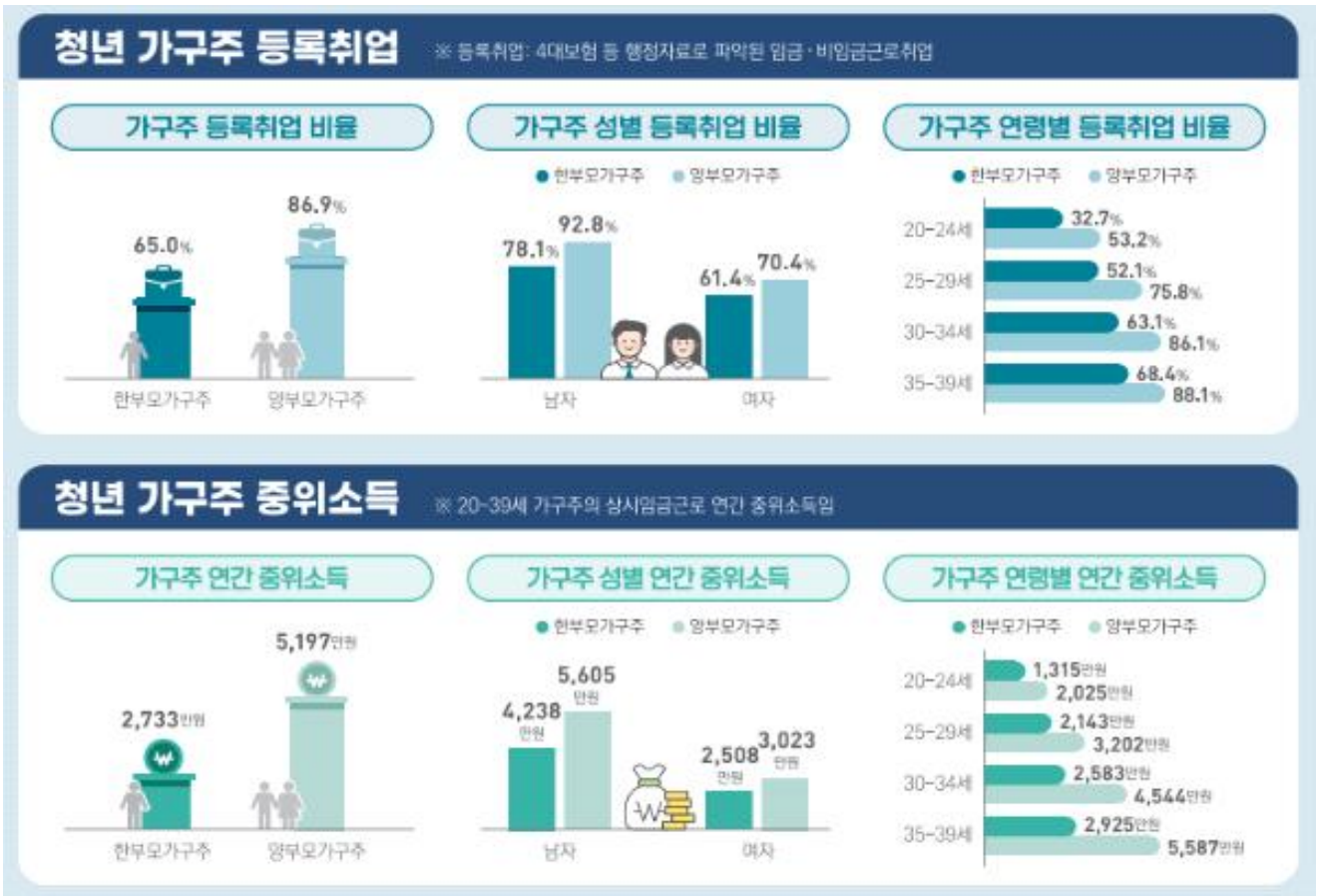
< 2023년 청년(20~39세) 한부모가구 비중(전국)>

(단위: %)



<그림 출처: 전라일보>

< 2023년 청년 한부모가구 가구주의 취업 및 증위소득 현황(통계청)>



2023년 20-39세 청년 한부모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통계청

20~39세 청년 한부모가구 일반 현황

청년 한부모가구 수



청년 한부모가구 비중



'23 청년 한부모·양부모 가구 현황



청년 한부모가구 구성

청년 가구주 성별 구성비



청년 가구주 연령별 구성비



청년 한부모가구의 가구원 구성



성·연령별 청년 한부모가구

가구주 성·연령별 청년 한부모가구 수



가구주 성·연령별 청년 한부모가구 비중



2.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5.10.16.)

◇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1 새로운 성장동력,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1. 바이오 허가 · 심사 규제 대전환

□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및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

○ (현황) 현재 바이오헬스 허가·심사는 소수의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자료**에 대해 허가요건별로 **순차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실이며, 새로운 물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심사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

○ (개선) 앞으로는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동시·병렬적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신약**을 **신속하게 허가**(목표 240일**)하여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

* (연구개발단계) 국가R&D 규제정합성 검토 → (비임상·임상단계) 사전상담 → (허가 신청 전) 예비검토 → (심사단계) 보완회의·대면상담

** △심사 수수료 합리적 인상 △심사인력 확충('26~)을 통해 허가기간 단축 노력

2.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황)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하여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으나, △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되어 있고, △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하여 치료 신청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또한, 중위험에 대한 임상연구 심의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연구에서 요구하는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되었음

*비임상시험지출비용 : 개별연구당 3~10억원 소요(현장의견)

○ (개선1)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하여 해외 원정 치료의 주된 질환(만성통증, 근골격계 등)을 치료가능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연내)

○ (개선2)**치료의 전제가 되는 수요가 많은 질환 대상 임상연구 활성화** 위해 **정부 주도로 기획·추진**(`26년)**하고**, 신속한 치료심의를 위해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할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하는 치료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연내)

○ (개선3)또한 **중위험 연구계획 심의시 고위험 수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26.3월)하고, 심의인력 확충 및 전문위원 pool 확대 등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

3. 데이터 활용 확대

□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화**

○ (현황) **사망자 의료데이터 정보**는 신약의 효과·한계를 검증하는데 생존데이터보다 중요한 지표가 되며, 비식별화 시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면제가 가능하나, 현장에서는 **비식별화 방법·판단 등에 애로**가 있어 데이터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지적

○ (개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비식별화 판단기준 등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화 할 예정(연내)

□ 심평원·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 연구·산업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

○ (현황) 학교 등 연구기관과 달리 산업계는 **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건강보험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에, △**위치에 따른 지역 간 편차**, △**제한된 운영시간**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

○ (개선) **개인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의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1차: `26. 1월~6월 / 2차: `26. 7월~12월)을 신속하게 추진

2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핵심규제 합리화

1.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사업기간·주체를 확대**

○ (현황) 현재 **농업진흥지역**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사용기간이 최대 8년에 불과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또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가 **지자체별로 달라*** 사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 총 228개 광역(세종·제주)·기초 지자체 중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격거리를 제한중(100m~1,000m)

○ (개선1)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시 발전사업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 주체로 허용하여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26.上)

*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 (개선2)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를 법제화한다.**(연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2. 폐자원 수입 규제 합리화

□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를 합리화**

* 글로벌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 전망: ('24) 280조원 → ('40) 1,540조원, 5배 이상 증가
국내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 전망: ('24) 6.7조원 → ('40) 21.1조원, 약 3배 증가

○ (현황)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핵심자원 확보 차원**에서 **폐자원**(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 등) 수입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엄격한 **수입허가 신고제도**, **수입관세(3%)** 부담 등으로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음

○ (개선)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26.上), 폐자원 **수입 관세를 완화**('26.1분기)

3. 산업단지내 공정부산물 재활용 확대

□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

* (예시) △철강슬래그 → 골재, △동식물성 부산물 → 사료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재활용시설 종류·용량 등 변경시 변경허가·신고, 운반·보관·재활용시설 운영기준·처리기간 등

※ 산업단지내 발생 사업장폐기물은 전체 사업장 폐기물 중 약 42% 차지(3,749만톤)

○ (현황)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투입**하거나 산업단지내 업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규제**가 일률 적용되어, 업계의 자원 재활용이 어려웠고, 관련 **규제에 따른 부담**이 컸음

○ (개선)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환경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26.上, 순환경제사회법 개정)

3 세계로 더 멀리,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1. 영화제작 지원 확대

□ **위기의 영화산업**, 정부가 **투자 및 세제** 등 **지원 확대**

○ (현황)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으로 **극장 중심 영화산업이 침체***되면서 국내 신규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 공급과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가 있었음

* '25.上 한국영화 관객수는 코로나 이전('17~'19년 평균) 대비 42% 수준

○ (개선) 적극적인 영화 제작이 가능하도록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모태펀드 및 콘텐츠 전략펀드 등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 지원**하고, 콘텐츠 투자 장려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

2.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 지상파 등 **방송광고 규제**를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화**

○ (현황) 방송광고 유형은 **'포지티브 규제체계(총 7종*)'**로 되어 있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디지털·OTT** 등에 비해 **방송사의 광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액은 약 2.7조원(`02년)에서 약 0.8조원(`24년)으로 70% 하락

○ (개선)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일(日) 총량제를 도입**하여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프로그램내, 프로그램외, 기타 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연내)

3.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 웹툰,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즉시 차단**

○ (현황)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이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며 **K-콘텐츠 불법유통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지만, **현행 차단 절차에 2~3주가 소요되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 콘텐츠 산업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차단이 가능**하게 하고,

- 또한 문체부와 방미통위 간 협업을 통해 명백한 불법 저작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아울러, **해외사이트 추적기술 개발** 및 **인터폴과 해외수사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

4 향후 계획

□ 정부는 향후에도 미래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계획

□ 이대통령은 특히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

○ 아울러 민생과 산업 현장의 변화 체감를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나갈 것을 당부

□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

붙임1 산업계 온라인 원격접속 허용 시범사업(안)

□ 추진배경

○ **오프라인 분석센터* 접근성 한계**에 따라 건강보험 DB에 원격접속을 허용해달라는 **산업계 요구에 대응**하여 **관련 시범사업 추진** 필요

* 전국에 28개소(건보공단 14개소, 심평원 14개소) 운영 중

□ 추진방식

○ **(허용 데이터) 저위험 가명데이터***에 한해 원격접속 허용

* 건보공단에서 컨설팅 업체 및 전문가 자문 통해 가명데이터 셋 개발 중(~'25.12월)

○ **(기간) 1차 시범사업('26.1월~6월)** 후 효과성·안전성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2차* 시범사업('26.7월~12월)** 추진

* 제공하는 저위험 가명데이터 셋 보완(안전성 강화, 제공범위 확대 등) 후 추진

○ **(참여기관) 별도제한 없으며**, 데이터 제공 **신청 접수** 시 **공단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에서 연구목적 등 심의 후 결정

○ **(준비상황)** '25.12월까지 시범사업 준비 완료할 계획

- **(시스템 개편)** 현재 원격접속 허용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공단 **데이터 제공·분석 시스템 개편* 중**(~'25.12월)

* 빅데이터 활용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25년 7월~, 총 29.5억)

- **(매뉴얼 개발)** 가명데이터 개발 이후 원격접속 허용 등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홍보 예정(~'25.12월)

□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

○ 시범사업 추진과 동시에 공단에서 전문컨설팅 업체 계약을 통해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 및 **안전성 검증** 예정('26년)

붙임2 국내 태양광 산업현황

□ 국내 태양광 설치규모

* 출처 : (~'24) 한국전력통계 연보, ('25) 한국전력통계 월보('25.8.)

○ 누적 설치현황 (사업용, 단위:MW)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6
태양광	14,575	18,521	21,150	23,947	27,096	28,796

○ 발전량 현황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6
총발전량	552,162	576,809	594,400	588,047	595,601	287,327
재생에너지	30,669	36,360	45,887	49,401	53,651	29,891
	(5.6%)	(6.3%)	(7.7%)	(8.4%)	(9.0%)	(10.4%)
태양광	16,611	21,822	26,975	29,288	32,725	19,815

□ 태양광 밸류체인별 수출입통계

○ 태양광 셀

금액 (백만불)	중국		미국		합계(기타국가 포함)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21	73.9	267.7	248.9	0.1	364.4	307.6
2022	5.8	358.5	16.8	0.2	28.5	363.7
2023	1.7	192.6	151.4	0.0	157.8	197.7
2024	1.8	102.3	551.7	1.3	558.2	114.5
2025.4	0.3	23.4	197.6	0.4	199.5	26.3
합계	109.7	1,775.5	1,851.4	3.4	2,223.2	1,909.9

○ 태양광 모듈

금액 (백만불)	중국		미국		합계(기타국가 포함)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21	14.9	335.6	473.0	11.4	724.5	340.1
2022	21.4	259.4	1,432.1	18.6	1,547.7	269.9
2023	5.7	353.1	9571	5.4	1,001.4	363.9
2024	0.9	329.6	64.9	65.6	123.9	336.0
2025.4	0.1	106.7	0.3	40.8	11.4	108.3
합계	50.0	2,572.4	5,529.0	404.3	8,913.2	2,632.7

붙임3 폐기물 수출입 관리체계

□ 「바젤협약」 개요

○ **(협약명)**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개요) 유해폐기물** 불법교역 방지를 위한 **당사국 간의 이동통제 목적**

* '89.3.협약 채택, '92.5.발효, **'94.2.한국 가입**, '94.5.비준 ('25.9 현재 **191개국 비준**)

- 국내 이행 위해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92.12)

○ **(내용)** △비가입국으로의 **유해폐기물**(약 89개 품목) **이동 금지,**
△가입국간의 **유해폐기물 이동시 상호동의**

* **미국은 非비준국이나**, 바젤협약에서 허용하는 OECD 규정에 따라 수출입 가능

□ 우리나라 관리체계

○ **(법령명)**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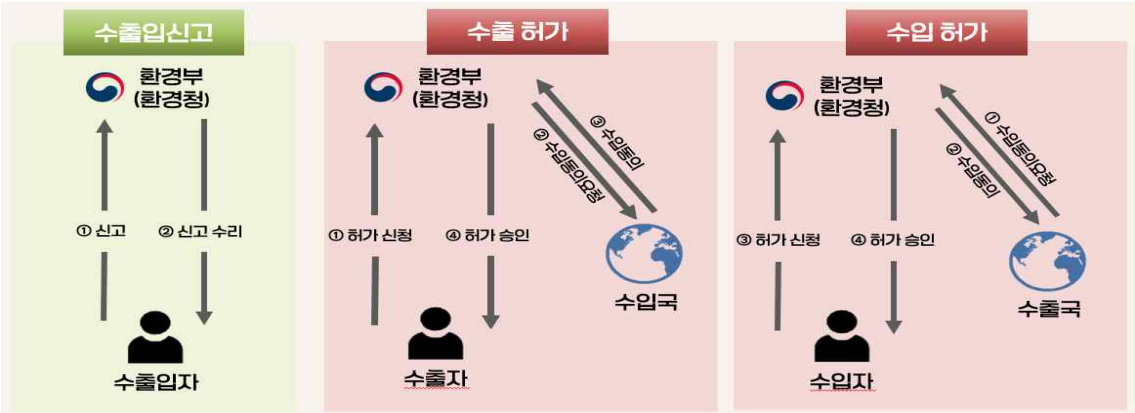
○ **(체계)** 수출입 폐기물의 유해성에 따라 ①**규제폐기물과** ②**관리폐기물**로 구분

① **(규제폐기물*)** 수출입 시 **수출국-수입국 상호동의 및 허가 필요**

* 중금속함유폐기물(폐납산배터리, 폐촉매 등), 혼합플라스틱, 폐염료 등

② **(관리폐기물)** 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상호동의 불필요, 신고수리 통해 수출입 가능**

< 폐기물 수출입 절차도 >



붙임4 지상파 방송 - 디지털·OTT 광고규제 현황

<table>
<tr><th>구분</th><th>지상파 등 방송</th><th>디지털·OTT
(유튜브 등)</th></tr>
<tr><td>광고
유형</td><td>○ 포지티브 규제체계(7종)
- ▲「방송법」에 나열된 7종*만 허용
▲신유형 광고 불허
* (7종)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td><td rowspan="5">규제없음</td></tr>
<tr><td>가상
·
간접
광고</td><td>○ 화면크기 규제
- ▲(일반) 화면크기의 1/4 이내
▲(DMB) 화면크기의 1/3 이내
○ 광고 허용장르 규제
- 가상·간접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장르를 상이하게 지정
<table><tr><td>가상</td><td>① 오락(어린이 주시청 제외)
② 운동경기 중계
③ 스포츠분야 보도 프로그램</td></tr><tr><td>간접</td><td>① 오락(어린이 주시청 제외)
② 교양(보도·시사·논평·토론 등 제외)</td></tr></table></td></tr>
<tr><td>중간
광고</td><td>○ 프로그램 방송길이에 비례하여 광고횟수를 규제
- 방송길이 45분 미만 프로그램은 중간광고 불가
<table><tr><td>길이
(분)</td><td>45
~60</td><td>~90</td><td>~120</td><td>~150</td><td>~180</td><td>180~</td></tr><tr><td>횟수</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r></table></td></tr>
<tr><td>광고
총량</td><td>○ 프로그램 '편성시간 총량제'
- 광고시간을 각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20% 이내로 제한
(광고주의 초과수요가 있어도 수용 곤란)</td></tr>
<tr><td>광고
시간대</td><td>○ 주류(17도 미만)·저영양식품 등 광고시간대 제한
▲(주 류) 07~22시 금지
▲(저영양 식품 등) 17~19시 금지
(어린이 주시청대상 프로그램)</td></tr>
</table>

3.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국토교통부, '25.10)

◇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 등을 담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 자진철거 유도,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예산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적극적 철거
◇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빈 건축물 허브 활용 매입·개발 등 정비·활용 지원

1 정책방향

○ '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부재**하여 그간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

○ 이에, 국토부는 ❶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❷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❸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

< 정책방향 >

빈 건축물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활력 제고

핵심 과제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입지는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입지는 정비·활용 활성화
세부 과제	• 특별법 제정 • 관리대상 확대 • 실태조사 내실화 • 주체별 역할·책임 부여	• 소유주 자진철거 유도 • 지자체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 민간 개발사업 연계 • 공공 철거 지원	• 관리·거래 네트워크 구축 • 정비사업 연계 강화 • 복합적 활용 지원

2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

-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현행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정의)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

  * 비정기 거주·사용, 1년 미만 미거주·미사용 주택 등 노후도가 높은 건축물

-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하고,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체계**를 **완비**해나갈 계획

  * (실태조사^{현행} : 5년) 전반적 분포 변화(등급 재산정), 정비계획 재수립 반영 등
    (현황조사^{신규} : 1년) 신규 등급 산정, 정비실적 및 현황 관리 등

3 활용도 낮은 입지는 적극적 철거

○ 노후·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

- 우선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철거)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소유주가 조치명령 미이행시),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여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

  * ①빈집철거 후 공용·공공활용 시 세부담 완화, ②빈집철거 후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5년간), ③빈집철거 토지에 3년 내 신축 주택·건축물 취득세 최대 50% 감면(150만원 限)

- 지자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 미이행시에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개발사업 진행 시 해당 **사업구역 외**의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하여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빈 건축물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하여 **철거 지원**을 **강화**

  * (사업비) '25, 전국100억원 → '26, 도시150억원, 농어촌105억원,
  (최대지원금액) 도시1.2천만원/호, 농촌0.8천만원/호

4 활용도 높은 입지는 정비 · 활용 활성화

○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 확대 - 빈 건축물 관리업 도입 - 빈 건축물 허브 설립을 통한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

- 현행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愛**(부동산원)'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여 **빈 건축물 매물 목록** 및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

-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하여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빈 건축물 허브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20년 경과 동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수용**한 후 **민간 매각**, **공공 개발**도 추진

○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밀집구역을 가칭**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용적률·건폐율] 법적상한 대비 1.3배(빈집밀집구역: 1배) [면적] 10만㎡ 미만(빈집밀집구역: 1만㎡ 미만)

- 또한,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제한 없이 활용**(숙박·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하여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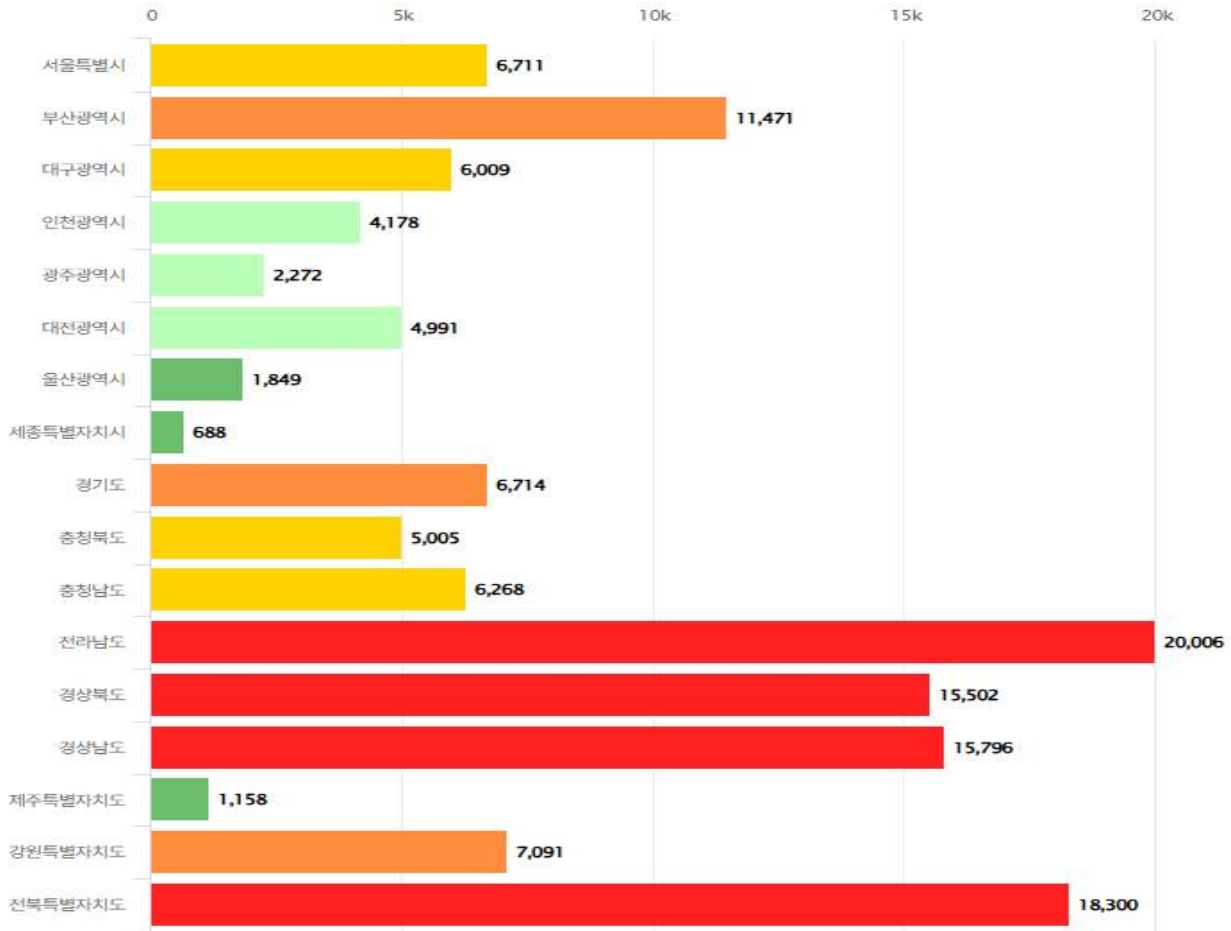
  * 예시: 공영주차장/공원(도시계획시설) + 문화복합시설(편익시설) 구축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정책 제언 >> [소관부서 : 주택건축과]

○ 빈집문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와 도시 쇠퇴가 주요 원인이며, 위생 문제(악취, 오염), 안전 문제(붕괴, 화재), 주변 환경 악화(쓰레기, 범죄) 등 직접적인 피해와 지역 슬럼화·경제 활력 저하 등 간접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24년 기준 **전국 빈집 13.4만호 중 전북자치도는 18,300호(전국 13.66%)로 전남**에 이어 **가장 많은 빈집**이 존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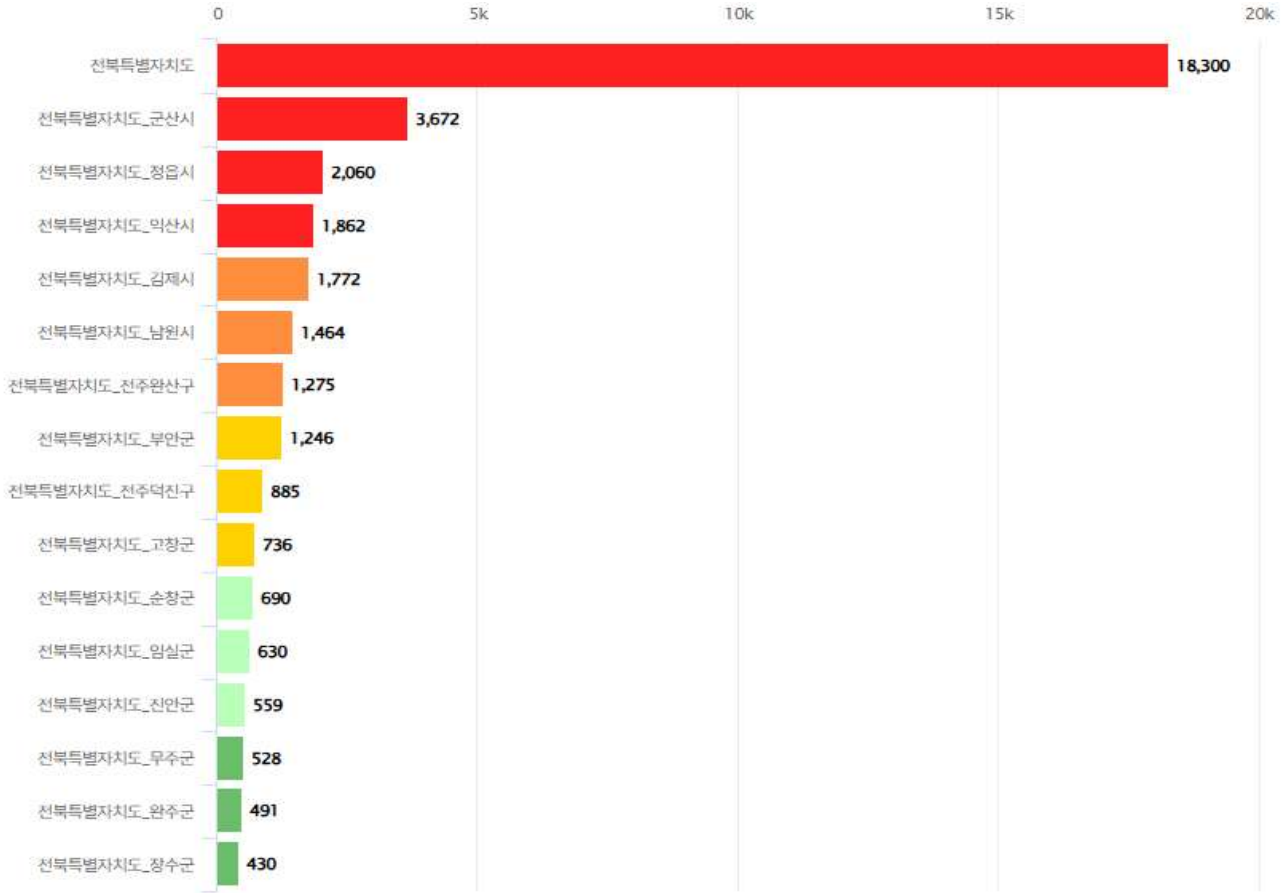
< 전국 빈집 현황 > ('24년 기준, 호)



※ 출처 : 빈집애(愛) https://binzibe.kr/binzibe/binzibplatform/statisticInfo/binzibStatus.do

○ '24년 기준 전북자치도는 18,300호 중 **군산시가 3,672호(20%), 정읍시 2,060호(11.3%), 익산시 1,862호(10.2%)**이며, 군단위에서는 **부안군이 1,275호(6.97%)**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북자치도 빈집 현황 > ('24년 기준, 호)



※ 출처 : 빈집애(愛) https://binzibe.kr/binzibe/binzibplatform/statisticInfo/binzibStatus.do

○ 전북자치도에서는 노후·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의 개량 또는 철거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생활의 질 향상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 '25년 빈집정비(502동/1,750백만원: 도비 525, 시군비 1,225), 희망하우스 빈집재생(90동/2,250백만원: 도비 675, 시군비 1,575),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225동/2039백만원: 국비 1,425, 시군비 614)으로 **총 6,039백만원의 예산으로 817동을 정비**하고 있으나, 이는 전북자치도 전체 빈집의 4.5%만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임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전북자치도는 중앙정부 정책 연계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기반 데이터 관리 △특성에 맞는 철거·활용 △민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과 함께 시군 중심의 실천 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빈 건축물의 **데이터화·권역화·맞춤화**를 기반으로 위험은 신속히 제거하되(안전), 가치는 체계적으로 재창출(재생)하는 **지역 자원화 전략**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안전 대응과 시범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민간투자와 주민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민관협력형 사업모델 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AI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AI 선박 분야(관계부처합동)

◇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 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AI 선박·드론 분야 간담회를 개최함 (10.1)**

Ⅰ. 현황 및 필요성

○ AI, Io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자율운항 선박은 미래 선박 핵심시장

* 세계 시장규모는 '24년 1,022억불에서 '32년 1,805억불로 10년간 76% 확대 전망

– 대내적으로도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도입을 통해 인적 해양 사고 최소화, 해운 인력 수급부족 완화 기대

○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하여 주요국의 기술개발 경쟁은 치열, '30년까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표준* 제정 전망

* 비강제코드 채택('26) → 경험축적기(~'30) → 강제코드 채택('30) 및 발효('32)

– 정부는 IMO Lv 2.5 수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실증을 지원*

* 산업부·해수부 공동으로 6년간('20~'25) 1,603억원 규모 지원



– 국내 조선 3사는 각 사별 독자적인 자율운항 시스템을 실선에 적용·실증 진행 중이며, 원격제어도 일부 실증 추진

Ⅱ. 비전 및 목표

◇ 자율항해 Level-Up* 초도기술 개발 완료(~'30년) 및 실증 돌입('31년~)

* [연안] 현재레벨2(선원탑승) → 목표3(선원미탑승) / [대양] 현재레벨3 → 목표4(완전자율)

Ⅲ. 추진방안 [산업부 · 해수부 공동 추진]

1 (지원체계) 연관 업종별 주요기업(조선소, 해운사, AI 기업 등)·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K-자율운항선박 얼라이언스」구성·운영('25.4분기~)

○ 얼라이언스를 주축으로 핵심기술 개발, 데이터 확보, 해상 실증 등 지원

2 (지원방안) R&D·실증사업 등과 병행해 선제적 규제 완화 추진

○ (예산)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사업 및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AI · 조선해운 기업이 협업하여 자율항해-기관자동화-화물 · 항만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핵심기자재 국산화 지원

* 1단계 R&D 사업은 '25년내 완료예정(연안레벨2: 원격제어, 대양레벨3: 선원미탑승)
→ 2단계 R&D 사업은 예타조사 면제 추진 중(사업기간 7년, 총사업비 약 6,000억원 규모)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목표

	As-Is	To-Be
항해 기관 화물	육안 근거, 선장 경험 의거 판단 기관사 순찰 및 조치 갑판장이 화물상태 확인 및 조치	AI 기반 최적항로 판단, 자율항해 자율수명예측 및 자율 패트롤 장비 조치 AI 모니터링 및 진단·수리 로봇 조치
효과	시스템 기반 판단 → 해양사고의 83%를 차지하는 인적해양사고 최적화 최적항로 운영 → 운용비용 22%이상 절감 선박 무인화에 따른 적재공간 증가 → 물류흐름 10% 이상 증가	

– (**실증사업***) 국내 연안선박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사업(‘26~’29)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학습·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셋 확보 및 보급

* 자율운항선박 AI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26~'29년, 국비 300억원), 1단계 사업을 통해 개발한 자율운항 기술 실증도 포함

○ (**규제·제도**) 신기술 실증을 위한 선제적 규제 완화 추진

- **(규제 샌드박스*)**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육상 원격운항 등 실증 지원

* 조선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자율운항 실증허가(규제특례심의위원회 '24.7)

※ 규제샌드박스 자율운항 실증 허가 주요 내용

○ **(내용)** 울산, 포항 등 근해에서 **선박 충돌 회피** 및 **최적항로 운항** 실증

○ **(대상)** **원격제어 플랫폼**이 설치된 8,000TEU급 컨테이너선 등 **선박 3척**

– **(운항해역 지정)**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25.下)하고 스트베드 확보

* 「선박안전법」선박시설 기준 등, 「선박직원법」승무정원 등 면제 특례 등 적용

운항해역 지정을 통한 실증·운항 지원 주요내용

	내 용	세 부 절 차							
운항해역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실증 운항을 할 수 있는 해역	사도지사 신청 (민간제안가능)	→	정책위 심의	→	해수부 지정	→	사도지사 운영	
안전성평가	자율운항시스템·기자재 대상 위험도 진단·평가	실증기관 신청	→	평가기관 평가 (KR·KOMSA 등)		→		해수부 통보	
운항승인	운항해역에서 안전성평가 결과 등 고려해 실증 운항을 승인	실증기관 신청	→	관계기관 협의 및 정책위 심의	→	해수부 승인	→	실증운항 개시	

– **(표준)** 선박 데이터 플랫폼, 자율운항 시스템 등 국가표준 제정 지원 및 IMO·ISO 등 국제표준 제정 적극 대응

○ (**세제**) 자율운항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 지원

- (국가전략기술)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지정(‘25.下)하고 R&D·시설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5.11월 예정) / R&D 30~50%, 시설투자 20~30% 세액 공제

Ⅳ. 세부 이행계획

시기		세부 이행계획
25년	4분기	•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 K-자율운항선박 얼라이언스 발족
		•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26년	상반기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 자율운항선박 데이터셋 확보·공유 방안 마련
		• 연안선박 대상 실증사업 대상 모집(1차)
	하반기	•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착수(예타 면제시)
		• 연안선박 대상 실증사업 착수
27년		• 연안선박 대상 실증사업 대상 모집(2차)
28년		•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내 표준 개발(2건)
29년		• 자율운항선박 글로벌 협력사업 기획·추진
30년		• 완전 자율운항선박 초도기술 개발 완료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정책 제언 >> **[소관부서 : 전환산업과]**

○ AI 선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센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능화, 자율화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자율운항 선박(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 AI 선박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5년 1월부터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울산에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위한 성능실증센터가 준공되었으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03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임.

○ 전북자치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설치및글로벌생명경제도시조성을 위한특별법」제41조에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특례로 규정하여 무인선박을 전북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음

<전북특별법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특례를 중심으로 무인이동체 산업 선점을 위한 육성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소관부서에서는 조속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이 필요하겠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어야 함

5.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의 안전하고 신속한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1 추진배경

○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최근 5년 (2020~2024년)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중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436건 (42.5%), '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286건 (27.9%)으로 나타남

2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

* ①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③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또한, 우리나라는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미이행 차량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선진국은 벌점 부과를 통해 제재방식을 다양화하고 있고,

○ 이에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함

○ 더불어,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필기)에 관련 문항을 늘리고, 위반 시 제재기준 문항을 추가하여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연간계획 등에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하였으며,

○ 출동 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도록 조례 등에 지원 및 협력 관련 규정을 삽입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 시 정차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강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긴급자동차의 신속・안전한 통행을 보장

《 조치사항 및 권고 대상기관 》

조치사항	소관부처	조치기한
1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확대		
① 조례 등 지원 및 협력 근거 마련, 별도 예산 확보 등 우선신호시스템 확산 기반 조성 ⇨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지원 근거 마련 및 주요 구간 설치	광역 자치단체	-
②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의 지역 편차 완화, 긴급자동차 통행 여건이 열악한 지역 대상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 및 계획 마련 ⇨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미흡지역 지원 근거 등 마련	소방청	
2 긴급자동차 진로방해행위 제재수단 강화		
① 반복된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한 동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3] 개정	소방청	26.8월
②「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 등 제재수단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 개정	경찰청	
3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방법 교육·홍보 활성화		
①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진로 양보 방법 관련 문항 확대, 피양의무 위반 시 제재 관련 문항을 추가 ⇨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긴급자동차 관련 문항 개편	한국도로 교통공단	26.4월
② 일반 국민 대상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방법의 홍보 활성화 및 기관 간 홍보 협력체계 강화 ⇨ 정기적 홍보 활성화 및 협력을 위한 근거 마련	광역 자치단체, 소방청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 '24년 기준 우선신호시스템은 전국에 총 27,77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1,898대의 긴급자동차가 시스템을 이용 중에 있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시간 절약, 교통사고 감소 등에 효과가 있음에도 설치에 지역적 편차가 존재함

○ 전국적으로 경기도, 부산광역시, 울상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조례 등 지원 및 협력 근거 마련 및 별도 예산 확보 등 우선신호시스템 확산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

《 (참고)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종 사고의 처리시간 단축 및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간 이동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하 "우선신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이 도 내에서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 관리·운영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설치되는 우선신호시스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도 내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전북의 경우, '23년부터 국토부 공모사업인 ITS(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내 우선신호시스템 구축·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ITS(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전주 6억, 익산 2억, 군산 6억, 정읍 1억

《 도내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현황 》

(기준: 2025.09.30.)

구 분	전 주	군 산	익 산	정 읍
운영시작	'23. 4월	'24. 1월	'23. 6월	'24. 7월
적용구간	전 구간	전 구간	❶ 익산소방서~원대사거리 ❷ 상공회의소~원대병원	❶ 정읍아산병원~현대3차@ ❷ 박동교차로~연지사거리
운영시간	24시간	24시간	09:00~18:00	24시간
운영차량	16대	17대	16대	10대
방 식	중앙제어방식			

○ 또한, 해당 시스템을 광역적으로 통합·운영할 전담 통합운영센터가 부재하여 시·군간 이동 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

○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출동환경을 개선하여 신속한 출동과 적시 도착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제주 '농케이션(農-vacation)' 및 남해 '런케이션(Learn-vacation)' 사례를 중심으로

◇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관계인구' 유치**가 주목받고 있음. 관계인구 유치의 성공 모델로는, '노동력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주 '농케이션'** 과 '**창업 기회 제공**'을 통한 **'정주 인구화'** 를 추구하는 **남해 '런케이션'** 사례가 대표적임. 타 지자체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분절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모색해야 함. 지역 자원과 관계인구 유치 목적을 결합해 사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계인구 유입 및 정착 모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배경 및 목적

○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기존 정주인구 외에 지역과 유대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관계인구'의 중요성이 부각**됨.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 확산 및 '한 달 살기'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가 관계인구 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음

○ 이에, 관계 인구 유치선도 모델인 **제주 '농케이션'**과 **남해 '런케이션'**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그 성공 요인을 도출함.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 강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관계인구 유입 및 정착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현황 및 법적근거

○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목표는 단순 관광객 유치를 넘어,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생활인구' 확대로 전환**되고 있음. 정부는 '생활인구 활성화 추진 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우수 사업 지원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돕고 있음 ※ [참고1] '25년 정부 생활인구 활성화 추진방안

○ 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2.06.10.제정)에 법적 기반을 두며, 이 법은 **'생활인구'의 개념을 최초로 법제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2024년 경제정책방향 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주요내용 >

(관계부처합동, 2024. 1. 4. 발표)

❶ **(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주택보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❷ **(방문인구)** 지정절차·지정규모 등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허용하고, 관광단지 혜택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혜택도 추가** 부여

❸ **(정주인구)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로 외국인 유입 지원

3 주요 정책사례

① 제주 농케이션(農-Vacation)

: 제주도는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한 '워케이션'에 농촌 체험(農)을 더한 '농케이션' 시범사업을 최근 추진하고 있음('25.06.)

- **사업내용** : 제주 '농케이션'은 참가자가 원격 근무를 하며 농촌 마을에 체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는 **공유 오피스와 숙박·체험비를 지원**하며, 참가자는 오전에 **농업 활동**을 돕고 오후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이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함

- **기대효과** : 이 사업은 단순 관광객 유치를 넘어,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관계인구' 형성**에 중점을 둠. 참가자들은 장기간 머무르며 **생활밀착형 소비**를 창출하고, 비수기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며, 나아가 **잠재적인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



<그림 : AI 생성 이미지>

② 남해군 '관광창업' 런케이션 (Learn-Vacation)

: 경남 **남해군 관광과 연계된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남해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체류형 워크숍임

- **사업내용**: 참가자들은 4박 5일간 남해에 머무르며 지역 관광 자원을 답사하고, 오후에는 공유 오피스에서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사업계획 구체화**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함
- **기대효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의 창의적인 인재를 유치하여 남해만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참가자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함



③ 제주 '장애인' 런케이션 (Learn-Vacation)

: 최근 워케이션(Work+Vacation)과는 다른 개념으로, 장애인을 위한 배움(Learn)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한 '런케이션(Learn+Vacation)'이 제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되어 주목받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배움과 여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신개념 평생학습 모델임

- **'사업내용**: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총 2억 4,000만 원의 예산(국비·도비 각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2025년 8월에 처음 시행됨.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제주에서 전통 요리체험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됨
- **기대효과**: 제주 '장애인 런케이션'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교육과 여가를 결합**한 신개념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배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여 **포용적인 지역 브랜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모델임

④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

: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창의적인 생활인구 유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충청북도의 '도시농부'**처럼 지역 특색을 살린 단기 체류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임 ※ [참고2] 고향올래 사업 소개

- **사업내용**: '워케이션', '로컬유학', '두 지역 살아보기' 등 5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임. 2025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총 3,7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북자치도는 완주군(로컬유학), 무주군(런케이션), 익산시(로컬벤처) 3곳이 최종 선정됨** (행정안전부, 2025.01.15.)
- **기대효과**: 이 사업은 방문·체류하며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도록 하여,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를 넘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관계를 지속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기대함

> ※ **충북 '도시농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최장 6개월간**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체류형 지원 프로그램**임
> · **(참가대상)**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도시 지역 거주민 대상
> · **(지원내용)** 프로그램 기간 동안 **월 30만 원의 연수비**와 함께 숙소(주거 공간)를 제공 및 영농 실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주어짐
> · **(주요활동)** 참가자들은 배정된 마을에 거주하며 영농교육 및 실습(기초 농업기술 등), 지역 일자리 체험(단기 농작업 등), 마을 교류 활동 등 참여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관계부서:관광산업과 · 인구청년정책과]

○ 최근 워케이션뿐만 아니라 **제주 '농케이션', 충북 '도시농부'**처럼 지역 특색을 살린 **체류형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이는 단순 관광을 넘어 지역과의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 유치가 지방 소멸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함

○ 전북자치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 기반과 풍부한 문화·생태 자원을 보유하여 체류형 생활 관광의 성공 잠재력이 매우 높음. 하지만 동시에 인구구조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인구 유입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전북 또한 인구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관계 인구 유입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총 2억 원 도비, 1,400여 명 대상, 숙박 및 체험비 지원 등)이 있으며, 또한 **'전북자치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총 3,000만 원 도비)은 장기 체류 여행객에게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SNS 홍보 과제를 부여하여 관광 소비 촉진을 함께 도모함

○ 이 두 사업 모두 도내 장기 체류를 유도하여 생활 인구 확대를 핵심 목표로 함. 이와 더불어, 최근 '고향올래' 정부 사업에 선정된 완주군 로컬유학, 무주군 런케이션, 익산시 로컬벤처 등 유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중요한 기회를 맞이함

○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보완이 필요함. 제주도 사례처럼 참가자 혜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순환경제' 모델**을 설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여야 하며, 참가자를 단순 체험객이 아닌 **지역의 '기여자'이자 '경제 파트너'**로 역할을 부여하여 **정서적 유대감과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유치 정책이 단기적 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수적임.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제11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는 보육·의료·교통·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체류 활성화에 대한 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워케이션, 런케이션 등 **체류형 교류사업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정주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됨

참고 1 2025년 정부 '생활인구 활성화' 추진 방안(요약)

☞ 정부의 **'생활인구 활성화 추진 방안'**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2025년에도 동일한 정책 기조가 유지 및 강화되고 있음. 정부의 추진 방안은 크게 '**세컨드홈 활성화, 관광 확대, 맞춤형 인구 유입 지원**'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됨

1. (생활인구) '세컨드홈' 활성화로 체류 기반 마련

* **핵심 내용**: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재산세·종부세·양도세)을 유지**해주는 정책임.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24.1.4.)>
* **목표**: 도시민이 농산어촌에 **두 번째 집(세컨드홈)을 부담 없이 마련**하도록 유도하여, 상시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핵심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워케이션, 농케이션 등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

2. (방문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으로 방문 유인 확대

* **핵심 내용**: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 이상'에서 '**5만㎡ 이상~30만㎡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4.3.5.)>
* **목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맞춤형 관광단지 개발을 촉진**하는 것임. 이를 통해 방문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정주인구)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로 인구 유입 지원

* **핵심 내용**: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에 맞춰 **우수 외국인 인재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쿼터와 참여 지자체를 대폭 확대**함.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25.2.20.)>
* **목표**: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의 필수 산업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함

참고 2 2025년 '고향올래' 사업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

1. 로컬유학 (Local Study Abroad) 🏘

: '로컬유학'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산어촌에 거주하며 지역 학교에 다니고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임

- **목적**: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학생과 가족의 유입을 통해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대표 사례**: **전북 완주군**이 '2025년 고향올래' 사업에 선정되어,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지역 공동체와 교류하는 모델을 추진할 계획임

2. 청년 로컬창업 지원 (Youth Local Startup Support) 💡

: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자 하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임

- **목적**: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대표 사례**: 전북 익산시가 '로컬벤처' 유형으로 '고향올래' 사업에 선정됨. 익산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이나 농산물을 활용한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함

3. 귀촌 체험 '한달살기' (Rural Living Experience 'Living for a Month') 🏡

: 본격적인 귀농·귀촌을 망설이는 도시민들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한 달 등 일정 기간 살아볼 수 있도록 숙소나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임

- **목적**: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함
- **대표 사례**: 전남 강진군의 '푸소(FU-SO, Feeling-Up Stress-Off)', 충북 옥천군의 '한달 살아보기' 등 다수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행정안전부

2025년 '고향올래(GO鄕ALL來)' 12개 사업지를 소개합니다!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이란?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체류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2025년 고향올래 사업지(12개)

워케이션



강원 삼척시, 충북 청주시,
전북 진안군

런케이션



전북 무주군

두 지역살이



충남 부여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도군

로컬유학



강원 고성군, 전북 완주군,
경남 거창군

로컬벤처



전북 익산시,
경북 상주시

2.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발표 ('25.10.)

◇ 부산시가 35~55세 '끼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전국 최초의 **종합 지원 종합계획(약 918억 원 규모) 발표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중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전북자치도는 현재 고용 중심의 분절된 지원에서 벗어나,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의 **'낀 세대'를 정책 대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주거, 사회적 고립 등을 포괄하는 융합형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을 검토 노력이 요구됨

1 배경 및 목적

○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55세 미만의 이른바 '끼인 세대'를 위한 종합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발표함. 해당 세대는 경제 활동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존의 청년층 및 노년층 중심 복지 및 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정책 사각지대** 발생함

○ 이들은 주택 마련, 자녀 양육, 부모 부양, 조기 퇴직 불안 등 복합적인 생애 주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 특히 **이혼 등 가족해체**를 겪은 **50대 남성 1인 가구**가 건강보험료 및 통신비 체납 등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신(新)복지 사각지대로 부상하는 상황임

○ 이에 부산시는 '끼인세대'의 정책 소외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끼인세대에서, 키(Key)세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제1차 지원 종합계획(2025~2028)을 수립·발표함

2 현황 및 법적 근거

○ **끼인세대(중장년층)의 사회·경제적 현황**

- 중장년층은 경제활동의 중심축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성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는 추세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중장년 1인 위기가구의 특성 분석과 지원 방안 연구**」('25.09.)에 따르면,
-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 대상자 중 **40·5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31.8%를 차지**했으며, **50대 남성 1인 가구는 경제적 빈곤보다 관계 단절과 정서적 고립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들은 부채 부담과 자녀 양육비 등으로 실질 가치분 소득이 낮음에도 복지 수혜 기준상 **'비(非)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중장년층은 스스로 위기가구임을 밝히는 데 거부감이 커, 기존 행정 중심의 탐지로는 발굴에 한계가 있음

○ **부산시의 법적 근거**

- 부산시는 중장년층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10월 전국 최초로「**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이 조례는 끼인 세대를 '부산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55세 미만의 시민'으로 정의하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됨.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해당 조례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로드맵의 성격을 지님 ※ [참고1]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

3 주요 내용

○「**제1차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은 '생애주기 지원 실현으로 다함께 행복한 부산'을 비전으로, 정책 소외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 및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함

○ 정책 소외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 및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함. 이 종합계획은 **2028년까지 총 918.43억 원**이 투입되며, **6대 분야에서 총 32개 지원 사업**이 추진됨

※ [참고2] 부산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2025~2028)

○ 이 계획은 기존 청년·노년층 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35세 이상 55세 미만의 끼인세대**를 정의하고, 이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원 형성을 지원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끼인세대 지원 추진방향(6대분야)>

6대 분야	추진전략	주요 지원사업
1. 일자리	**힘이 되는 일자리정책**	-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40~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기업 인센티브 지원) -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등 지원) - 인생 2막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스마트 돌봄 인력양성
2. 역량 개발·교육	교육을 통한 성장지원	- 직장인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끼인세대 맞춤형 직업훈련) - 끼인세대 경력단절여성 특화 취·창업 프로그램 - 끼인세대 자기개발 프로그램 및 교육 설계 지원 서비스 운영
3. 주거 안정·금융	안정과 복지를 위한 통합 주거지원 실현	- 끼인세대를 위한 희망더함주택 입주 기회 확대 (중형평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폐업소상공인 대상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재원 형성 지원) - 부양가족이 있는 끼인세대 가구 이사비용 지원
4. 문화·여가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여가 생활	- 부산형 어린이 패스트트랙 (공공시설 이용 시 자녀 동반자 편의 증진) - 공연예술관람 시 영유아 돌봄서비스 제공 - 끼인세대(50+)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5. 출산·양육	함께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조성	-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 어린이 대중교통요금 무료 지원 (초등학생 자녀 가구 교통비 부담 경감) - 부모 방과후 돌봄 공동체 지원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출산·양육 정보 통합 포털 구축
6. 노후 준비·건강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통합 지원	-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 생애재설계 및 노후 준비 교육: 인생 리모델링 프로젝트 - 건강생활 실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마음돌봄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4 유사 지방자치단체 사례

○ 부산시의 '끼인세대' 지원 정책은 청년과 노인정책의 경계에 있는 중장년층을 전면에 내세운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이미 다수의 광역 지자체는 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① 서울특별시「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

- 서울시는 40~64세 중장년층 369만 명을 대상으로 5년간 4,600억 원을 투자하는 종합 대책인「서울런 4050」을 2022년 12월 발표함
- 일자리와 역량을 높이고 미래 걱정은 줄인다는 목표 아래, 4대 분야 48개 사업을 추진함. 40대에게는 취업·창업 역량 강화 교육을, 50+세대에게는 경력 맞춤 일자리 및 디지털 역량 지원을 집중함. 특히, 평생학습 포털을 중장년 진로 탐색 및 컨설팅 기반의 '서울런 4050' 서비스로 고도화함

②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전담 조직 신설

- 경기도는 2022년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국 산하에 '**베이비부머 기회과**'를 신설함
- 베이비부머 세대(50~69세)의 노후 설계, 평생 교육, 취·창업 지원 등을 전담하며, 기존의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로 개편하는 등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기회 확대를 행정 조직 차원에서 제도화함

③ 대구광역시의 중장년 인생 이모작 지원

- 대구광역시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병행하는 '인생 이모작' 지원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함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재취업·창업 교육 및 직업 상담을 제공하고, '인생이모작 지원센터(50+센터)'를 통해 **생애 재설계 및 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중점 운영함
- 특히, 중장년들이 **자율적인 학습 및 사회공헌 동아리**를 지원하여,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유도함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관계부서: 일자리민생경제과 외)

○ 전북자치도는 광역 차원에서 주로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중장년의 고용안정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완주군이나 김제시의 사례처럼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관찰되는 정책적 특성을 보임. 부산시의 '끼인세대' 종합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년 지원 정책 방향에 다음과 같은 핵심 시사점을 제공함

* **완주군 사례**: 완주군은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중장년층 1인 가구 6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함. 이 조사는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게 주거·건강·정신·사회적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함
* **김제시 사례**: 2024년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반찬 나눔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대상자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이는 중장년 세대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 회복**이라는 복지 영역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례임

○ **지원 대상 및 범위의 선제적 확대**

- 현재 만 40세 이후의 '신중년'에 집중된 지원 대상을 부산시처럼 **30대 후반 ~ 40대 초반**을 포괄하는 '낀 세대' 개념으로 확대해야 함. 이들은 **경력 전환, 주거 마련, 부양 부담** 등 복합적인 생애 주기적 위기에 직면하므로, 초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 특히, '비(非)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50대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함

○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전담 조직 신설 검토**

- 기존의 고용 중심, 또는 분절된 사회복지 사업을 넘어, 부산시의 6대 분야(일자리, 교육, 주거·금융, 노후준비 등)와 같이 **생애 재설계, 문화, 건강, 사회적 관계망**을 포괄하는 **융합형 종합 지원 모델**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서울런 4050**' 사례와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기회과' 신설 사례를 참고하여, **광역 단위의 중장년층 전담 추진 조직** (예: 중장년 지원과 등) 신설 또는 기존 조직 내 기능 강화를 검토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함

○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및 발굴 체계 강화**

- 부산시가 조례를 바탕으로 4년간 약 918억 원을 투입하는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전북자치도 역시 **광역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중장기(4~5년) 통합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함
- 또한, 중장년층이 스스로 위기가구임을 밝히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 중심의 발굴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의 생활밀착형 조기 발굴시스템**을 강화하고 통합사례 관리 서비스를 내실화하여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지원해야 함

참고 1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 전문 [2023.10.11.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과 신중년의 끼인세대로서 경제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끼인세대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끼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끼인세대"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5세 이상 5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끼인세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그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끼인세대 지원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끼인세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끼인세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끼인세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끼인세대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직, 이직, 재취업, 재창업 등 일자리 지원
2. 디지털격차 해소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 및 전문교육을 위한 지원
3. 생애재설계 및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
4. 자녀교육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 절감 지원
5.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 사업(여성경력단절 해소 지원)
6. 「부산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주거안정화 지원)

7.「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출산·양육 지원)
8.「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금융부채 감소 지원)
9.「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0조에 따른 생활문화진흥 사업(문화 활동 지원)
10.「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여가 활동 지원)
11.「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건강증진 지원)
12. 그 밖에 끼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관계부서의 협력) 제5조에 따른 끼인세대 지원사업 추진 부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끼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부산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2025~2028) (요약)

제1차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요약)

□ 끼인세대 지원 추진방향(6대 분야, 32개 지원사업)

비 전	생애주기 지원 실현으로 다함께 행복한 부산
목 표	정책 소외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및 경제활력제고

6대 분야	추진전략	지원사업
[1] 일자리	힘이 되는 일자리정책	❶ 인생 2막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❷ 끼인세대 인생 제2막 컨설팅 지원사업 ❸ 스마트 돌봄 인력양성 ❹ 일하는 엄마·아빠 찾아가는 상담 지원 ❺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 ❻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
[2] 역량개발·교육	교육을 통한 성장지원	❶ 직장인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❷ 끼인세대 경력단절여성 특화 취·창업 프로그램 ❸ 끼인세대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❹ 교육 설계 지원 서비스
[3] 주거안정·금융	안정과 복지를 위한 통합 주거지원 실현	❶ 부산주거포털: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플랫폼 운영 ❷ 끼인세대를 위한 희망더함주택 입주 기회 확대 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❹ 끼인세대 이사비용 지원 ❺ 폐업소상공인 대상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4] 문화·여가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여가 생활	❶ 부산형 어린이 패스트트랙 ❷ 공연예술관람 시 영유아 돌봄서비스 제공 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종사자 공연예술 관람 지원 ❹ 끼인세대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❺ 끼인세대 문화·여가 동아리 활동 지원 ❻ 가족이 함께하는 공연 관람 운영 ❼ 끼인세대(50+)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5] 출산·양육	함께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조성	❶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❷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❸ 어린이 대중교통요금 무료 지원 ❹ 출산·양육 정보 한눈에, 양육 포털 통합 및 개선 ❺ 부모 방과후 돌봄 공동체 지원 ❻ 바람솔솔 놀이터 조성
[6] 노후준비·건강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통합 지원	❶ 건강생활 실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❷ 마음돌봄 디지털 플랫폼 홍보 및 활성화 ❸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❹ 생애재설계 및 노후 준비 교육: 인생 리모델링 프로젝트

□ 분야별 세부과제 ► '25~'28년 총사업비 918.43억원('25년 221.54억원)

분야	지원사업
1 일자리	□ **이·전직 지원** ○ **(자격증 취득 지원)** 국가자격 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생애 1번) ○ **(컨설팅 지원)** 역량강화 교육, 일자리지원, 생애설계·노후준비 등 원스톱 서비스 □ **디지털 기술 활용** ○ **(스마트 돌봄 인력양성)**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제공 □ **일·가정 양립 지원** ○ **(찾아가는 상담 지원)** 직장생활, 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 **맞춤형 일자리 창출** ○ **(구직 활동 지원금)** 끼인세대 경력단절 여성 대상 구직활동비(교육훈련 등) 지원 ○ **(4050 채용촉진 지원)** 40~50대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인센티브 지원
2 역량개발·교육	□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 **(직장인 직업역량 강화)** 끼인세대 맞춤형 직업훈련 추진 ○ **(특화 취·창업 프로그램)** 끼인세대 경력단절 여성 특화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끼인세대를 위한 자기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설계 지원 서비스)** 진로교육 상담 및 컨설팅, 자가진단 지원
3 주거안정·금융	□ **정보통합 제공** ○ **(정보 접근성 향상)**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 정보 서비스 제공 □ **주거 안정화 및 복지실현** ○ **(희망더함주택 입주 기회 확대)** 끼인세대 대상 중형평수(42㎡이상) 공급확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 지원 ○ **(이사비용 지원)** 부양가족이 있는 끼인세대 가구 이사비용 지원 □ **수입구조 개선** ○ **(희망두배통장 지원)** 취업한 폐업소상공인의 목돈 마련 등 재원형성 지원
4 문화·여가	□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향상** ○ **(부산형 어린이 패스트트랙)** 공공 체육·문화 시설 이용 시 자녀 동반자 대상 이용 절차 마련 ○ **(영유아 돌봄서비스)** 공연예술관람 시 영유아 돌봄서비스 제공 □ **맞춤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종사자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공연 관람료 할인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끼인세대 생애과정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여가 동아리 활동 지원)** 끼인세대로 구성된 문화 및 여가활동 동아리(동호회) 지원 ○ **(가족이 함께하는 공연 관람)** 자녀와 부모가 함께 관람하는 가족 동반 공연 운영 ○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끼인세대(50+)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자원봉사
5 출산·양육	□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기업 컨설팅, 맞춤형 교육 등 지원 ○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어린이 대중교통요금 무료 지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통비 부담 경감 ○ **(출산·양육 정보 통합 제공)** 생애 단계별 맞춤형 양육 정보 제공 □ **자율적·유연한 돌봄 지원** ○ **(돌봄공동체 지원)** 방과 후 돌봄공동체 지원으로 자율적인 육아를 통한 유연한 돌봄 환경 조성 ○ **(바람솔솔 놀이터 조성)** 구조화되지 않은 생태친화적인 놀이공간 조성
6 노후준비·건강	□ **건강증진 지원** ○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끼인세대 직장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마음 돌봄 디지털 플랫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공공웹프로그램 홍보 강화로 접근성 향상 □ **노후준비 지원** ○ **(자산형성 기회 제공)** 끼인세대 대상 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 제공 ○ **(인생 리모델링 프로젝트)** 생애 재설계 및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 제공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언어서비스에서 위기가정 발굴까지 : 결혼이민자 통번역 · 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5. 8.]

<< 연구요약 >>

◇ 결혼이민자 통번역 및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언어 소통과 통합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그러나 **임금·고용 차별, 열악한 업무 환경, 인권 침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결혼이민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적 모델'로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025년 6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국민의 배우자)은 146,592명으로, 2006년 대비 약 77% 증가**하였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의 현황과 처우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 성과가 한국 사회에 가지는 **기대효과를 탐색**한 후, **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1) 사업 현황 및 실태

○ 결혼이주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와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 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모국어와 한국어 능력을 활용해 다른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입국 초기 상담부터 가족 간 의사소통, 행정·의료·법률 등 공공 서비스 이용 지원, 위기 상황 긴급 지원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함. **2024년** 한 해에만 **서비스 제공 건수**가 **총 598,009건**에 달할 정도로 현장의 수요가 매우 높음

[표 1] 이주여성 통번역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건)

구분	계	일상생활	교육	법률	의료	기타
2020	430,976	100,239	122,735	24,859	13,385	169,758
2021	483,093	100,537	143,766	24,071	25,116	189,603
2022	512,814	108,459	154,537	33,245	16,709	199,864
2023	533,267	117,081	148,491	33,132	16,858	217,705
2024	598,009	133,556	169,394	30,950	19,674	244,435

※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 주요업무 참고자료』, 2025, p.269.

- **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정 내에서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함께 배우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이는 자녀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2024년 기준, 연인원으로는 42만여 명이 참여했지만, 실제 참여 아동은 17,734명으로, 한 명의 아동이 약 24회에 걸쳐 꾸준히 참여했음을 보여줌

[표 2]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제공 실적

(단위: 명)

구분	계	부모코칭	이중언어 직접교육	온라인학습권
연인원	429,209	232,239	195,727	1,243
실인원	17,734	17,478	5,239	161

※ 주: 실인원 합계는 중복참여자를 제외한 실제 참여 인원이다.
※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 주요업무 참고자료』, 2025, p.265.

○ 현장 종사자 처우와 근무 여건 실태

- 본 보고서는 사업의 긍정적 효과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인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지적함. 현장 종사자들은 **표준화되지 않은 임금·수당 체계, 과중한 업무** (본연의 업무 외 행정·행사 동원), 차별 및 인권침해 등을 경험하고 있음. 응답자의 67.8%가 차별을, 27.0%가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며, 피해자 대다수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답하였음[1)]

1)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2024.3.8.)「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p.6.8.

2) 사업의 기대 효과

○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 참여 사업은 우리 사회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언어 장벽을 해소하여 아동이 부모 대신 통역하는 **'영케어러(young carer)' 문제를 예방**하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는 **안전망 역할**을 함

○ 이주아동의 필수 예방 접종률은 55.2%로 한국 아동(96.4%)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통번역 서비스는 이런 **건강 정보 격차**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가족 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킴

○ 결혼이주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에 기여하며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됨

3. 개선 과제 및 정책방향

○ 결혼이주여성 종사자에 대한 **표준화된 임금·수당 체계 도입과 공정한 경력 인정 등 차별적 처우의 시정이 시급함**. 또한, 통번역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행정 동원을 방지하고 필수 경비와 전용 공간을 보장해야 하며, 정기적인 인권 실태조사와 보호 절차 마련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역할을 단순 언어 지원을 넘어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자'로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함. 더불어, 현재의 불안정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장기 근속자에게 **상용직 전환을 보장하는 등 고용안정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소관부서 : 여성가족과]

○ 전북특별자치도는 **결혼이민자 비율(13.6%)이 전국 평균(11.2%)보다 높아,**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중요함. 현재 국적 취득 지원 등 **초기 정착 지원 단계를 넘어**, 이들이 지역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임

<전북자치도 외국인 현황- 외국인 특성>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출처 : 전라북도(2023).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전북도의 체류 외국인 인구 구성(2023.3.)을 보면, 유입형 이민자는 57.9%, 정주형 이민자는 28.5%로 나타남. 이 중 **결혼이민(F-6)은 12.3%**로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도내 산업 수요와 연계한 **'취업 연계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인턴십·취업 성공금 등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여 이들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지역의 필수 인력으로 양성**해야 함. 이는 이주여성 개인의 성장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체계의 내실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현재 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통번역 서비스는 이들의 생활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번역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켜야만 서비스의 질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이렇게 튼튼해진 정책 기반 위에서, 자녀 양육, 경력 단절 등 **변화하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함. 특히 '365 언니 멘토단'과 같은 관계망 형성을 활성화하여, 이들이 단순 **정책 수혜자를 넘어 지역사회를 이끄는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임

* '365 언니 멘토단': 2023년부터 시작된 전북자치도의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으로, 선배 이주여성(320명, '24.12. 기준)이 멘토가 되어, 신규 입국자의 초기 정착과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임

2.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자 [전북연구원]

◇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이나, 일반인도 참여하여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협력과 연대감이 형성되는 글로벌 문화축제 성격을 가지며, 종교·순례관광 진흥의 기회라는 점에서 종교행사를 넘어 환대의 마음과 지역 발전 차원에서 공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전북의 대응 방향과 지원 정책 기반 마련 필요**

1 연구배경

○ 세계 각국에서 최소 4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이 참여하고, 전주교구대회에 외국인 1만 여명을 포함하여 4~5만 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머드급 행사라는 점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K-문화수도 전북을 알리고 우수한 종교유산을 활용한 종교·순례관광을 진흥하는 중요한 기회임

○ 전북도가 종교행사인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목적은 '전북에 방문한 세계 청년을 환대와 연대의 마음으로 맞이하고', 'K-문화수도 전북만의 세계청년대회가 되도록 돕고', '국제순례지 승인 등 종교·순례관광을 진흥'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첫째, 대회를 지원할 정책 기반 마련,
둘째, 대회 참여자를 위한 순례길 정비 및 순례 프로그램 개발,
셋째, K-문화와 종교유산이 연계된 융합콘텐츠와 축제 개발,
넷째, 종교공존 대표 지역으로서 브랜드 구축과 종교유산의 국제화가 필요함

2 세계청년대회 개요

○ 세계청년대회는 1985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젊은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목적으로 '세계 젊은이의 날'을 선포하며 시작되었고, 2023년 열여섯 번째 대회까지 세계 청년의 순례·친교를 위한 국제대회로 성장함

○ 1986년 3월 2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차 세계 청년대회가 개최된 이래, 해마다 각 지역의 교구에서 대회를 주최하였으며, 세계 젊은이와 순례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로서 3~4년에 한 번씩 개최됨

○ 세계청년대회는 평균 180개국에서 참여하며, 참석자 규모가 매머드급으로, 1995년 필리핀 마닐라 대회에는 약 4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고, 2008년 호주 시드니 대회에는 가장 적은 인원이 참석하였는데, 이마저도 약 40만 명에 달하였으며, 가장 최근 대회인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는 약 150만 명이 참석하였음

3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 2023년 리스본 대회 폐막 미사(2023.8.6)에서 프란치 스코 교황이 서울을 차기 개최지로 발표하면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가 확정됨

○ 대회 기간은 2027년 7월 말부터 8월 초로, 대회 3개월 전에 최종적으로 정해지며, 대회 기간 중 처음 4박 5일은 14개 지역교구에서 각각 교구 대회를 열고, 서울로 모두 집결하여 5박 6일 일정으로 본대회를 가짐. 본 대회(서울)에서는 교황 환영행사, 개막미사, 교리교육, 십자가의 길, 젊은이 축제, 밤샘기도, 폐막미사 등이 진행됨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일정(안) 》

<table>
<tr><td>7월
28일</td><td colspan="3">29일</td><td>30일</td><td>31일</td><td>8월
1일</td><td>2일</td><td>3일</td><td>4일</td><td>5일</td><td>6일</td><td>7일</td><td>8일</td></tr>
<tr><td rowspan="3">도착</td><td colspan="3" rowspan="3">교구대회</td><td rowspan="3">출발</td><td rowspan="3">이동</td><td rowspan="3">개막
미사</td><td colspan="3">교리교육 성삼일</td><td>YF</td><td>폐막
미사</td></tr>
<tr><td colspan="4">젊은이 축제(YF)</td><td>봉사자
만남</td></tr>
<tr><td>YF</td><td>환영
행사</td><td>십자가
의길</td><td>밤샘
기도</td><td></td></tr>
</table>

※ 대회장소 : 본대회(서울) 및 14개*(군종교구 제외) 지역 교구

* 인천, 의정부, 수원, 춘천, 원주, 대전, 청주, 대구, 안동, 부산, 마산, 전주, 광주, 제주

※ 주최 / 주관 : 천주교 서울대교구 / (재)2027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 대회를 주관하는 서울대교구는 최근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대회의 주 참여자(10~20대)가 관심이 많은 K-POP)을 고려하여 서울대회 참석자의 경우 최대 10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며, 외국인은 20~30만 명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전주교구대회의 참여인원은 최소 외국인 1만 여명을 포함 4~5만명(전체 예상 참가자 수를 14개 교구로 나눠 산출한 평균값)으로 예상됨

○ 전북이 한국 천주교의 중요한 성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세계 청년이 전주교구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교황이 역사적 현장이나 성지, 종교적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순례하게 되는데,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유해가 발굴된 전북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외국인 순례를 포함한 대회 참자가의 숫자는 짐작하기 어려움

○ 외국인 포함 4~5만 여명이 전주교구대회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이 숫자는 2023년 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여자인 4만 3,000여 명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서울 본행사가 아닌 전주교구대회만 하더라도 세계 각국 청년과 대회 참여자가 전북 곳곳을 방문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임

4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통한 전북의 기회

1. 전북의 종교 및 순례 관광 활성화 계기

○ 전북은 천주교뿐 아니라 우리나라 6대 종교와 관련한 유산이 풍부하며,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사업(종교문화시설 건립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나, 종교 및 순례 관광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종교 및 순례 관광은 문화관광의 한 범주로서 특수목적관광으로 종교, 명상(수행), 치유(healing, 마음치유), 성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광을 통해 마음(정신)치유, 정신고양, 자아성찰 등의 행위에 참여하는 관광을 말함

2. 국제순례지 조성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천주교의 경우 교회법전에 따라 순례지는 교구장이 승인하는 교구순례지, 주교회의가 승인하는 국가 순례지, 교황청이 승인하는 국제순례지로 나뉘는데, 국제순례지는 세계적으로 30곳이 있으며 한국에는 서울(아시아 최초)과 해미읍성(서산시)이 있음

○ 천주교인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과 비종교인도 방문하여 성찰과 치유를 경험하는 순례지는 종교와 무관하게 누구나 공유하는 인류 보편 문화 유산으로 인식되며, 비천주교 신자에게도 인기가 많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일본 시코쿠 순례길 등이 대표적임

○ 전주는 한국 최초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연의 순교 지인 전동성당, 이들의 유해가 발굴된 초남이 성지, 기록으로 입증된 세계 유일의 동정부부 순교자가 묻힌 치명자산 성지, 서울 서소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순교 성인과 복자를 배출한 숲정이 성지가 있으며, 한국인 주교가 최초로 나온 자치교구(1939년)로 이러한 역사에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국제 교류가 이뤄진다면 국제순례지 승인이 가능하리라 봄

○ 또한, 세계 각국 성직자와 청년에게 한국 및 전북의 천주교 유산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현재 충청남도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한국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3. 세계적인 종교 공존 지역으로서 위상 제고

○ 전북은 여러 종교가 발전한 영성문화 중심이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대표 지역으로, 특히 4대 종교가 손을 잡고 함께 순례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세계종교문화축제'를 진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시군과 종단이 의견을 모아 '이웃종교 탐방길(아름다운 순례길)' 10개 코스를 개발하는 등 종교 공존 및 화합을 실천함

○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이지만, '2027 WYD 전주 교구대회' 주제가 '만남'이라는 점에서 세계 순례자와 청년, 한국문화와의 만남 외에 다른 종교와의 만남을 실천하는 대회로 만든다면 종교 공존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역으로서 위상이 제고될 것임

4. 2036 올림픽 유치 활용과 도시 홍보

○ 2036 하계올림픽 개최에서 전북(전주)이 갖는 강점은 K-문화 수도라는 점과 여기에 종교 간 갈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달리,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종교문화축제 등 종교 간 공존문화가 대표적인 문화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올림픽 유치에 있어 전북의 경쟁력이 더 극대화될 것임

○ 또한, 2036년 하계올림픽이 전북(전주)에 유치될 경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최고의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는 2036 전북(전주) 올림픽을 홍보하는 무대가 될 수 있음

5 전북의 대응 방향과 과제

1. 대회 지원의 필요성과 대응 방향

○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각국의 10~20대 청년과 일반 국민도 참가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글로벌 협력과 연대가 이뤄진다는 점, 대회를 통해 지역 발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종교행사를 넘은 공적인 대응이 필요함

○ 전북도가 대회를 지원하는 목적은 전북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의 청년에 대한 손님 맞이로 전북을 방문한 이들이 불편하지 않고, 대규모 참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자는 의미임

○ 또한, 대회를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고, 전북을 방문한 세계 청년에게 K-문화를 체험하게 하여 K-문화수도 위상을 제고하고, 전북의 성지가 국제순례지로 승인받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여기에 종교공존 지역으로서 이미지를 확산하여 종교·순례 관광의 국제 거점으로 진흥하는 데 대회 지원의 또 다른 목적이 있음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전북의 대응 비전과 목표 》



2.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

○ 세계청년대회 지원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첫째, 손님맞이를 위한 지원, K-문화 프로그램 운영, 국제적인 종교·순례 관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세부적인 지원협의체 참여 분야와 지원 내용은 일반적인 국제행사 지원 분야와 더불어 세계청년대회 안내 자료(천주교 서울대교구 2027 서울 WYD 지역조직 위원회)에서 제시된 지자체와의 협력 사항을 참조

《 세계청년대회의 교구대회 개최 교류 관할 지자체 협력 사항 》

• 교구대회(DID) 준비를 위한 대회 주최 교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 - DID를 위해서도 숙박, 교통, 행사 장소, 의료, 치안, 비상사태 서비스와 재정 지원, 공공시설 사용지원, 문화유산 탐방을 위한 협조가 필요

자료 : 천주교 서울대교구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 "세계청년대회 안내 자료" 참조

둘째, 세계청년대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주교구에 더 많은 청년이, 더 많은 프로그램이, 더 한국적인 청년대회가 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전주교구대회에 대한 홍보, 전북을 방문한 순례자의 숙박, 순례를 위한 순례길 개발과 정비, 외국인 순례자를 위한 환경 조성, 대회를 통한 전북의 종교 · 순례 관광 진흥 사업, 지역의 문화자원과의 연계 방안, 국제순례지 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 등 대회 진행에 따른 세부 사항부터 대회를 통한 지역 발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셋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천주교 행사이지만, 전북을 방문한 외국인 순례자를 환대하는 측면에서, 문화 교류를 통해 국제적 연대감을 쌓아 전북을 세계에 알린다는 측면에서, 대회를 계기로 종교 · 순례 관광의 국제적인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함을 알려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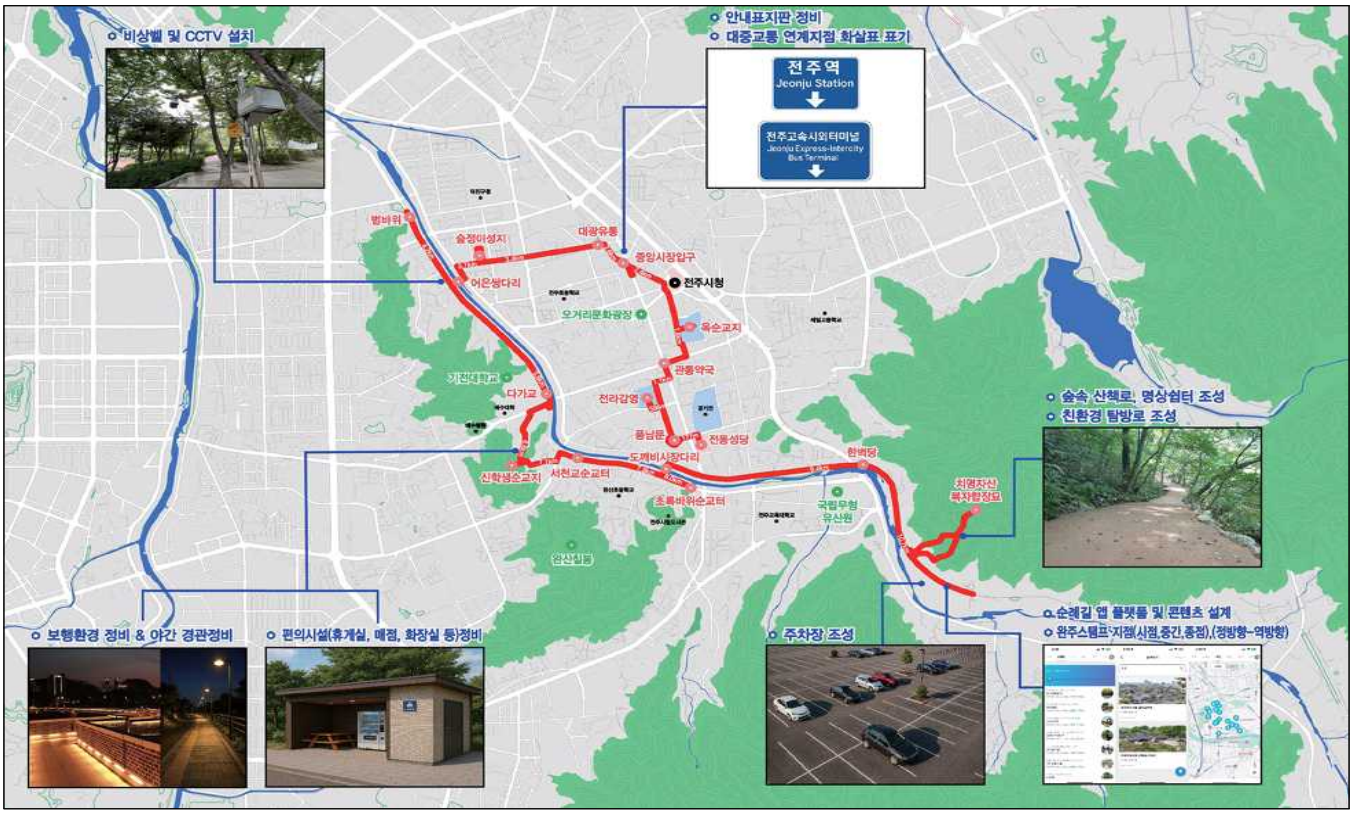
○ 세계청년대회 대응 순례길 정비와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시설) 순례길의 기반시설은 순례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핵심 요소로, 노면을 정비하고 다국어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행환경과 외국인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벤치, 그늘막, 음수대 등 휴게시설과 공중 화장실을 확충하고, 가로등 및 반사판 등 조명시설을 보강하며, 위험 구간에는 난간과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함

- (이용자)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셔틀버스를 도입하며,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구간도 조성하고, 순례 인증을 위한 스탬프 투어나 인증서 발급, 모바일 해설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전주의 종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해설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함

- (운영관리)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공사, 종교단체,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함

《 순례길 정비 방안 (예시) : 전주 순례길 사례 》



○ K-문화수도 연계 융합콘텐츠 및 축제 개발 필요

- 14개 교구에서 대회가 개최되지만, 전북의 경우 K- 문화수도로서 가장 한국적인 문화대회가 되도록 전주 교구조직위와 협력하여 다양한 K-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주교구에서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세계잼버리 당시 시군 주도의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했듯이 세계 각국 청년이 전북 내 시군으로 이동하여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 더 많은 세계 청년이 전주교구대회에 참가하고, 다른 교구대회 참여한 참가자가 전북을 방문하도록 한국의 전통문화와 K-POP 등을 연계한 전북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각국 교구에 홍보하는 전략을 추진

-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천주교 등 6대 종교와 전북의 문화를 연계한 종합적인 축제, 또는 종교문화 분야별 국제적 행사와 축제가 개발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종교기록, 종교음식, 종교건축 등을 문화콘텐츠로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계종교기록대회, 세계종교 음식축제, 세계종교성물페어, 세계종교건축대전 등을 개발

○ 종교 공존 지역브랜드 구축과 종교유산의 글로벌화 필요

- 국제적인 종교화합 축제로서 세계 종교문화축제 개최, 종교화합 국제순례길 조성, 기존에 조성된 이웃종교 탐방길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세계청년 대회와 전북의 문화를 연계할 수 있는 코스를 선정, 이웃종교 탐방과 전북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검토

- 전북의 순례지를 교황청이 승인하는 국제순례지로 격상되도록 기초연구 및 국제적 교류 등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충청남도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한국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국제순례지 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함께 국제적인 종교 · 순례관광 거점을 목표로 세부 사업을 개발 · 추진

- 6대 종교와 관련된 유네스코 등재 유산(한국의 서원, 동학농민혁명기록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미륵사지 등)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천주교 유산 외에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한 6대 종교 유산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정책적 제언 >>

○ 세계청년대회는 종교를 넘어 전북 모두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2년 폭넓은 지원조직과 종합계획이 필요함

○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이나, 일반인도 참여하여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협력과 연대감이 형성되는 글로벌 문화축제 성격을 가지며, 종교 · 순례관광 진흥의 기회라는 점에서 종교행사를 넘어 환대의 마음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공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

○ 먼저, 전북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 청년을 환대와 연대의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며,

○ 전국 최초로 협의체를 구성한 경기도 사례보다 더 폭넓게 전주교구대회 조직위원회, 전북도 · 시군, 유관기관, 다른 종교기관, 문화 및 관광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원조직이 구성되어,

○ 단순 행사 지원이 아니라,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종교유산 활용 전략 속에서 체계적으로 대회를 지원하는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함

3. 중앙정부 및 시·도 교육청 문화예술교육활동 및 학교예술교육활동 및 학교예술강사 지원 정량 분석 [나라살림연구소]

<< 연구요약 >>

◇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지방교육재정으로의 이관 후 국비 지원 상실 및 예산 급감

◇ 예산 축소로 인한 예술강사 생계 위협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위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재개입으로 예산 안정성 확보와 정규직 예술교육 전담제 도입 검토가 필요함

1 배경 및 문제 인식

1. 중앙 사업 이관으로 인한 우려 제기

○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하여 운영함.

○ 해당 사업을 국비 지원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만 운영하게 되면서 국고의 급격한 삭감이 있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증액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삭감 수준에 대처하지 못하는 수준임.

○ 이에 따라 예술강사의 일자리 축소와 더불어 지역별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 박탈과 예술교육 격차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어왔음.

2. 문제의 표면화 및 심화

○ 현재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 예술강사 사업의 예산은 국비 지원이 상실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2023년 대비 2025 지방교육재정 이관에 따른 예산 편성은 광역 중 상당수가 부정적 감소 또는 동결의 양상을 보임.

○ 지역 맞춤형 예술교육 제공이라는 기대효과의 달성보다는 떠넘기기식 예산 삭감이라는 결과에 가까움.

2 주요내용: 국비 지원 이관 이후 예산 변화 추이

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단위 사업 예산 변화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한국문화예술교육원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지원,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지원의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총예산은 2025년도에 비해 2026년 6.4%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와 '한국문화예술교육원 지원' 프로그램은 예산이 증가하였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편성에서 제외되었음.

표 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말 (B)	2026년 예산안 (A)	증감 (C=A-B)	%
프로그램 세출예산	120,714	88,315	77,128	72,226	△4,902	△6.4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60,542	28,736	13,017	13,587	570	4.4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40,167	45,476	42,185	35,580	△6,605	△15.7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4,045	-	-	-	-	-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4,890	2,890	6,716	10,698	3,982	59.3
한국문화예술교육원 지원	11,001	11,144	11,941	12,292	351	2.9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지원	69	69	69	69	0	0.0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지원	-	-	3,200	0	0	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2025~2026), 재구성

○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은 사업 운영비, 예술강사 인건비, 처우개선비로 나뉘었으나, 2024년부터의 단계적 이관으로 2026년에는 사업비 및 처우개선비만 지원함.

○ 인건비의 감소는 실질적인 예술강사 수 및 참여학교, 강의 시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위축 양상을 띠고 있음.

표 2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세부사업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시간]

학교문화예술교육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말 (B)	2026년 예산안 (A)	증감 (C=A-B)
총계		57,472	28,736	13,017	13,587	570
지원 예산	사업운영비	8,574	4,287	4,205	4,205	0
	예술강사 인건비	46,502	23,251	-	-	-
	처우개선비	2,396	1,198	8,812 (평균 238천원*8개월)	9,382 (203천원*10개월)	570
사업 지원범위						
지원 범위	예술 강사	5,021	4,805	4,613	4,613	0
	참여 학교	8,693	8,482	7,572	-	-
	교육 시수	1,695,340	676,661	-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2025~2026), 재구성

2. 문화예술교육활동 및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변화

○ 문화예술교육 활동 예산은 2023년 대비 17개 광역 중 12개 시·도 감소,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23년 대비 17개 광역 중 10개 시·도가 감소 또는 종결.

표 3 광역별 학교 문화예술교육활동 및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세출예산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분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2023년 (B)	2024년	2025년 (A)	차액 (C=A-B)	%	2023년 (B)	2024년	2025년 (A)	차액 (C=A-B)	%
강원	5,311	7,588	12,203	6,892	129.8	1,650	3,290	3,290	1,640	99.4
경기*	17,651	10,161 (67,993)	14,363 (62,948)	△3,288	△18.6	3,520	3,520	2,752	△768	△21.8
경남	11,421	11,749	9,838	△1,583	△13.9	2,000	2,000	3,200	1,200	60.0
경북	7,346	6,506	6,217	△1,129	△15.4	2,736	2,544	2,574	△162	△5.9
광주	6,144	6,981	5,441	△703	△11.4	1,649	1,649	1,500	△149	△9.0
대구	6,135	6,542	7,064	929	15.1	948	948	1,100	152	16.0
대전	2,527	1,807	1,658	△869	△34.4	948	948	948	0	0.0
부산	15,601	12,231	11,345	△4,256	△27.3	2,400	2,400	2,400	0	0.0
서울	15,278	13,448	8,028	△7,250	△47.5	4,837	4,834	862	△3,975	△82.2
세종	170	152	443	273	160.6	433	432	442	9	2.1
울산	5,189	4,471	4,242	△947	△18.3	900	1,100	1,100	200	22.2
인천	9,990	9,366	8,761	△1,229	△12.3	1,500	1,500	1,350	△150	△10.0
전남	7,521	6,867	6,390	△1,131	△15.0	1,900	1,900	1,900	0	0.0
전북	17,438	15,153	23,653	6,215	35.6	2,243	2,243	4,991	2,748	122.5
제주	7,079	5,980	6,076	△1,003	△14.2	800	800	750	△50	△6.3
충남	18,218	23,250	23,829	5,611	30.8	2,100	2,100	2,150	50	2.4
충북	4,775	4,425	4,738	△37	△0.8	1,564	1,564	1,564	0	0.0
계	157,794	146,677	154,289	△3,505	△2.2	32,128	33,772	32,873	745	2.3

* 경기도의 24년 67,993백만원, 25년 62,948백만원은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현장체험학습 사업'으로 이는 '남성과 여성 교원이 동등하게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 전문성 함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만큼 사업 및 재원의 성격,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되어 이원화하여 분석함

출처 : 시·도 교육청 교육특별회계 본 예산(2024~2025) 및 1차 추경 예산서(2024~2025), 재구성

3. 학교 예술강사 인건비 및 지원금 변화와 1인당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예산의 지역별 증감 양상

○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설명서에 따르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예술강사에 대한 인건비 국비 지원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편성된 처우개선비는 인건비 외 간접적이고 사후적인 지원인 동시에 실질적인 예술강사의 '인건비' 항목으로 보기엔 어려움.

표 4 국비 및 지방교육재정 합계에 따른 학교 예술강사 1인당 지원금 추정

[단위 : 백만원, 명, 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인건비(국비)	46,502	23,251	0	0
	처우개선비(국비)	2,396	1,198	8,812	9,382
	지방교육재정	32,128	33,772	32,873	-
	합계(A)	81,026	58,221	41,685	-
선정 예술강사 수(B)		5,021	4,805	4,613	4,613
1인당 평균 지원금 추정(원, C=A/B)		16,137,423	12,116,753	9,036,419	-
23-25년 증감률(%)				-56.0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방교육재정으로의 이관 이후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임.

○ 전체 1인당 문화예술교육 활동 예산은 증가했으나, 11개 광역은 평균 20.2% 감소함.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격차를 일으킬 수 있음.

표 5 광역별 학생(10~19세) 1인당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 비교

[단위 : 명, 백만원, 원, %]

구분	2023년			2025년 8월 기준			평균 증가율	
	인구(10~19세)	문화예술교육활동	1인당 교육비(a)	인구(10~19세)	문화예술교육활동	1인당 교육비(a)	증감액(C=A-B)	증감률(D=A/B*100
서울	733,211	15,278	20,837	721,039	8,028	11,134	△9,703	△46.6
대전	137,836	2,527	18,333	135,949	1,658	12,196	△6,138	△33.5
부산	263,339	15,601	59,243	264,020	11,345	42,970	△16,273	△27.5
경기	1,320,631	17,651	13,366	1,327,809	14,363	10,817	△2,549	△19.1
울산	109,462	5,189	47,405	109,463	4,242	38,753	△8,652	△18.3
경북	217,311	7,346	33,804	215,317	6,217	28,874	△4,930	△14.6
제주	70,469	7,079	100,456	70,076	6,076	86,706	△13,750	△13.7
인천	272,079	9,990	36,717	275,235	8,761	31,831	△4,886	△13.3

구분	2023년			2025년 8월 기준			평균 증가율	
	인구 (10~19세)	문화예술교육 활동	1인당 교육비 (a)	인구 (10~19세)	문화예술교육 활동	1인당 교육비 (a)	증감액 (C=A-B)	증감률 (D=A/B*100
경남	315,947	11,421	36,148	313,790	9,838	31,352	△4,796	△13.3
전남	158,933	7,521	47,322	155,478	6,390	41,099	△6,223	△13.1
광주	147,525	6,144	41,647	144,361	5,441	37,690	△3,957	△9.5
계/평균 (b)	3,746,743	105,747	455,278	3,732,537	82,359	373,422	△7,441	△20.2
세종	50,736	170	3,351	53,654	443	8,257	4,906	146.4
강원	129,053	5,311	41,154	125,689	12,203	97,089	55,935	135.9
전북	164,304	17,438	106,133	159,969	23,653	147,860	41,727	39.3
충남	202,057	18,218	90,163	202,521	23,829	117,662	27,499	30.5
대구	214,121	6,135	28,652	212,813	7,064	33,193	4,541	15.9
충북	144,446	4,775	33,057	142,936	4,738	33,148	91	0.3
계/평균 (a)	904,717	52,047	302,510	897,582	71,930	437,209	22,450	61.4
전체 계/평균	4,651,460	157,794	44,576	4,630,119	154,289	47,684	3,108	7.0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재구성(2023년 12월, 2025년 8월)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 지방교육재정의 이관으로 다수의 광역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예술교육의 예산이 감소 또는 동결의 결과로 나타남.

○ 지방 사업으로 편성되어 자율적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라는 기대효과를 목표했지만,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 없는 사업의 이양은 사업 축소라는 우려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었음.

○ 우려 제기에도 해결 방안의 검토없는 이관은 문화예술교육의 예산 축소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 학교 예술강사의 일자리 위축과 더불어 지역별 예술교육 기회의 격차가 심화하는 예견된 문제가 발생함.

○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개입이 불가피하며 정규직 예술교육 담당자 제도가 필요함.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외]

○ 전북자치도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총 예산은 2023년 5,402,574천원에서 국고(문체부) 예산 삭감으로 2024년 3,679,891천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2024년 대응 투자로 2,242,645천원을 예산 편성함

○ 도교육청은 문체부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하여 4,991,500천원을 본예산 편성하였음에도 2025년 학교 예술강사의 총 지원 시수는 전년 대비 41,706시간 감소함

< 2022~2024년 학교 예술강사 예술 분야별 지원 시수 현황 >

년도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애	공예	사진	디자인	총계
2022	41,335	15,852	2,818	24,941	7,596	6,225	1,218	3,284	**103,249**
2023	42,472	15,996	2,676	25,287	7,292	6,449	1,132	3,476	**104,780**
2024	28,279	10,208	1,680	16,607	4,675	4,139	693	2,147	**68,428**
2025	10,676	3,728	800	6,503	2,006	1,664	462	883	**26,722**

(출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2~202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현황, 2025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현황, 재구성.

○ 예술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비 재원을 재편성하거나 이전 수준을 복원할 필요가 있음.

4.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의 역할?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요약 >>

◇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학교' 역할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관계 재설정, 학교 체제의 유연화, 지역단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

1. 서 론

○ 우리나라는 89개 시·군·구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특례 조치와 별도의 기금을 통해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대비 총인구 감소율이 5.6배 높고, 인구 구성 측면에서도 국가 전체 평균 대비 유소년 및 청년 생산연령 인구 비율은 낮으나, 고령인구 비중은 높다. 2020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은 그 외 지역의 16% 수준에 불과하며, 유치원, 병원, 노인시설, 공연시설의 평균 접근 거리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멀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며, 인구 기반의 각종 사회 시스템이 부실해지고 행정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 지역의 학교 또한 시설 개선 투자 제한, 상치교사 및 순회교사 증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학급당 학생 수 등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된다.

○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노력을 살펴보고,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과 학교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여건 변화

○ 지난 10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학교 수는 전국적으로 0.3% 증가하였으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오히려 5.7% 감소하였으며,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17.2% 감소한 반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8%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 교원 수는 4.2% 증가한 반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2.9% 감소하였다.

○ 2023년 초등학교 6학급 이하 학교 수 및 전체 학교 수 대비 비율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전체 초등학교는 1,406개교이며, 이 중 6학급 이하 학교 수는 623개교로 43.6%를 차지한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6학급 이하 학교가 1,064개교로, 17.2%에 해당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초등학교 중 학급당 학생 수 5명 이하인 학교는 485개교로, 전체 초등학교의 34.5%를 차지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이동의 인해 지역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일반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과 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서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22년과 2023년 교육분야 투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2023년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유초중등 분야 투자 지역은 22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고, 투자 규모 또한 전체 기금의 6.2%에 불과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초중등에 대한 투자가 60% 수준이며,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34% 수준이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투자 지점을 학교에 대한 투자와 학교 밖 투자로 분류한 결과 사업비의 2/3 이상이 학교 밖에 투자되고 있었으며, 사업 내용별로 보면 인프라사업 비중이 60% 수준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20% 수준이다.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교육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교육 투자 현황

구분		2022		2023	
		사업 수	금액(억 원)	사업 수	금액(억 원)
학교급	유초중등	29(64%)	240(59%)	23(55%)	375(62%)
	고등	1(2%)	9(2%)	2(5%)	24(4%)
	평생	15(34%)	124(39%)	17(40%)	205(34%)
투자 지점	학교 내	6(1%)	116(28%)	8(19%)	200(33%)
	학교 외	37(86%)	293(72%)	34(81%)	403(67%)
사업 내용	인프라사업	30(69%)	253(62%)	25(60%)	360(59%)
	프로그램사업	6(14%)	97(24%)	8(14%)	98(16%)
	복합 사업	7(17%)	59(14%)	9(26%)	149(25%)
전체		43(100%)	409(100%)	42(100%)	603(100%)

출처: 나라살림연구소(2023)와 교육분야에 투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교육분야 투자 현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교육투자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는데, 화천군이 대표적이다. 화천군 사례의 특징은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을 군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돌봄·보육, 주거에 대한 투자를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 진행하여 그 성과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화천형 놀봄'프로젝트나 어린이 안심셔틀, 화천커뮤니티센터 등을 통한 교육·돌봄 인프라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실행력이 발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화천군은 2001년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 '화천군 인적자원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최근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설계를 통해 10년간 공공산후조리원(무료), 대학등록금 100% 지원, 거주비(월 50만 원), 화천학습관 운영, 교육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 131개 사업에 2,500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투자 결과 화천군 교육만족도는 2018년 82.4%에서 2022년 94.1%, 관내 고교 진학률은 2012년 91%에서 2022년 105%, 2022년 합계출산률은 전국 0.78명보다 2배가량 높은 1.40명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최인환, 2024).

다. 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지원 노력

○ 도지역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작은학교 지원을 통해 일부 학교들에서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 지역교육과정 운영, 학생 참여형 수업, 인성 및 예능교육 강화, 체력증진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강화, 생태탐구 및 자연체험, 무학년제 운영 등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학생들의 만족도 및 참여도를 높이고,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교육과정에 학부모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하여 지역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에 기여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작은학교 성공사례로 소개되는 학교들의 경우 전입하려는 주민들에게 거주지를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증가하였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 순회교사 배치로 인한 교원 부족,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미흡과 문화적 결핍 등의 문제점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학생 수가 많은 도시 지역 또는 읍 지역의 학생이 학생 수가 적은 지역으로 진학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학구제, 지역의 소규모 학교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설계·운영 하는 공동교육과정, 도시 지역 학생을 농·어촌 학교로 일정기간 보내는 농촌 유학 등은 소규모 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단위학교 경계를 허문 시·도의 대표적 정책들이다.

3. 성공 사례: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 아산시 송악면의 거산초등학교는 2001년 분교장으로 격하되어 폐교 위기에 놓였으나, 학교와 지역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학생 수가 증가하여 본교로 승격되었다.

○ **첫째, 지역과 학교의 교육과정 연계가 활성화**되어 있다. 거산초등학교는 지역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이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기치로

학교 교사와 마을 교사가 협력하여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의 배움을 넓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5월의 수채화교실, 6월 서예교실, 11월 랄랄라교실, 10월~12월의 연극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과 마을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학교 교사와 마을 교사의 협력을 통해 지역 속에서 배움을 확대하고 있다.

○ **둘째, '교원이면서 동시에 지역민'**인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거산초등학교에는 2010년부터 인근 송남초와 거산초 등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교장 공모제를 통해 근무하는 교장이 있었다. 학교장의 기대와 지원 속에서 교원들은 지역민과 학부모와 함께 호흡하려 노력하였고, 지역민과 학부모 역시 교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였다.

○ **셋째**,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존재**한다. 거산초등학교는 전원형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았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체험 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학생 수가 증가하여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련 사업에 참여한 교원이 이후 교장 공모제를 통하여 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15년 이상 일관된 교육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4.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교육을 통한 지역 소멸 대응 방향

가.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의 역할

○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지역에서의 학교는 '교육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보다는 '교육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 **첫째, 학교는 근원적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공통적으로 순회교사 및 상치교사 배치로 다양한 선택과목 및 방과후학교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소인수 학급의 증가로 팀 활동 및 또래 친구의 부재 등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렵고,

낙후된 시설임에도 시설 개선이 제한적이어서 부모들이 기대하는 교육의 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 규모에 따른 기초학력 차이는 학교 요인 외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인(이주 배경 학생 요인 증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지역 간 격차(농산어촌 등 소규모 학교 vs 인구유입지역 과밀 학급) 완화를 중점 목표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추가 교원 배치, 소규모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 공동 학구화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급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둘째,**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지역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거산초등학교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거산 마을 이야기 지도'를 만들고 학교는 이것을 지역화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인재는 지역의 초·중·고가 설계·운영하는 지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 학생이 타 지역 상급 학교로 진학한 경우 방학 중 지역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등 지역과 연계를 지속하도록 한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생활인구로서 지역을 찾도록 한다.

○ **셋째,**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는 **지역사회의 '학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평생학습의 공간이자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연대' 함양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거산초등학교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해유'라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모여 서로 논의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방과후활동도 이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대응 방향

1)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재설정

○ 학교교육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지역사회가 아닌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연계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는 학교가 필요한 자원을 지역에서 활용하는 일방향적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보완하는 관계임을 인정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소멸을 늦추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2) 학교체제 유연화와 지역의 학교 재배치 및 재구조화

○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학교별로 독립된 학교 체제를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연한 학교체제 구축의 목적은 동일 또는 인근 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학교들이 공유와 협력을 토대로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지역의 부족한 교육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약점을 극복하고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김성욱 외, 2021).

○ 지역 수준의 학교 재배치 및 재구조화는 적정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다른 학교급과 통합운영하는 것을 전제한다. 인구감소지역의 학생 수 추계를 고려하면,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방법으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학교 재배치의 과제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 총량(예를 들면 일반고 2, 특성화고 1, 중학교 4, 초등학교 8 등 반드시 필요한 지역의 학교 규모를 의미)에 따라 공동교육과정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학교(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 학교) 또는 통합

운영학교로 운영하거나 인근 학교와 통폐합하여 지역의 거점학교로 운영하는 것이다.

3) 교육과정의 유연화와 자율성 확대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초등학교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정한 '의무편성(국가필수)'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80% 이상을 편성해야 하고, 자율편성(학교자율시간 등) 교육과정은 각 교과(군)별 시수와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의 20% 범위(학년별 최대 64시간)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과목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다. 의무편성 교육과정 비율을 낮추어 지역 교육과정이 자리 잡을 여지를 두어야 한다.

4) 교원 확보 및 배치

○ 지역 내 학교의 재배치 및 재구조화라는 학교의 외형적 변화가 교육력 제고로 이어지려면 교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의욕 있는 교원이 배치되고, 그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요구를 잘 이해하는 교원이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 전보 및 배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 전보 기준의 적용 유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작은 학교에 대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초빙교사 우선 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충분한 재정의 확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교 및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기준재정수요 중 학교운영비 산정은 표준 교육비 연구 결과의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교육비 단가에 교육부장관의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동일한 규모의 학교,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동일한 교육적 수요를 갖고

있음을 가정한다. 인구감소지역은 다문화·결손가정 학생 비율이 높다. 학생들의 특성이 다름을 인정하고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수요에 따라 차등 경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지역에서 학교가 유지되면서 지역이 유지되는 것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지역 유지를 위한 보정 지수 개발이 필요하다.

6) 지역단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지원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지역 수준에서 총괄하여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복합시설과 도시재생 사업, 교육발전특구, 지역활력타운 등의 사업은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근거로 수행될 경우 보다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교육분야 투자는 6% 수준으로 미흡한데, 이는 지역 내 소규모 학교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보여준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물론이고 행정, 주민자치회, 동창회, 향후회, 농협 등 지역 내 모든 구성원이 논의에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이럴 경우 전입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주거문제와 일자리 연계 등 통합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 공동체의 유지, 교육 자원의 집중적 활용, 거점학교 육성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이라는 토대를 활용하여 학교와 학부모, 주민의 노력으로 학교가 유지될 수 있다.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사례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사례

1. 원스톱 폐업지원 시 소상공인 개인의 신청편의 제공방안 마련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도 결산 분석 / 2025.7.) -

(1) 현 황

○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경영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의 하나로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정도에 따라 각각 경영개선, 원스톱 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등 4개로 나뉘는데, 그 중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폐업절차를 밟고자 해도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 법적 권리관계 정리, 채무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 본 사업의 2024년 당초 편성액은 679억원이었으나 집행 도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170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적으로는 총 849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연내 실집행되었다.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2024회계연도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	
	계획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상공인 재기지원	166,308	179,594	179,594	179,594	0	0	274,806	350,455
희망리턴패키지	151,000	168,386	168,386	168,386	0	0	245,010	311,492
원스톱 폐업지원	67,900	84,986	84,986	84,986	0	0	133,200	192,745

주: 본 사업의 2025년 본예산은 당초 2,748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은 3,241억 9,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은 3,504억 5,5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4개 분야의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시 4개 분야 중 희망하는 분야들을 선택하면 공단이 일괄하여 신청요건에 대한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되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 보면, ①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탐색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신청하여 공단 자체 컨설턴트를 통해 1대 1 컨설팅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② 점포철거비 지원은 임대차 입주점포의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서비스이며, ③ 폐업 법률자문은 법무법인을 통한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사업, 세무 등에 대한 1대 1 법률자문 및 서류작성 대행 서비스이다. ④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공적채무조정) 또는 단기·소액 연체(우려)자를 대상으로 한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개인워크아웃(사적채무조정)을 법무법인이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전체 예산액(변경액 기준 850억원) 중 점포철거비 지원이 68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점포철거비 지원 서비스는 전용면적 평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 내(변경 후 기준)에서 전문 철거업체를 통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2만 5천여 개의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였다.

[2024년도 기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서비스 집행내용]

구분	내용	지원단가	지원업체수	예산액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에 대해 1대1 전문가 컨설팅 (소진공 자체 컨설턴트)	90만원	21,300명	192억원
점포철거비 지원	전용면적 평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 철거비용 지원(전문업체 자체 섭외)	250만원	25,300명	633억원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자문 (법무법인)	60만원	1,500명	9억원
채무조정 신청지원	개인파산·회생 및 워크아웃 지원 (법무법인)	200만원	750명	15억원

주: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것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별도의 실질적인 심사선정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지원사유 미충족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신청자가 탈락하고 있는바, 폐업 소상공인 개인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거나 간편 상담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세부 서비스 별로는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기본적으로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의 서비스별 지원요건 및 구비서류]

<table>
<tr><th>구분</th><th>공통요건</th><th>지원불가 사유</th></tr>
<tr><td>사업정리
컨설팅</td><td rowspan="4">・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단, 폐업자는 2020.1.1. 이후 폐업자
(서비스에 따라 기준일자 다름)
・지원불가 업종이 아닐 것
・사업개시 후 60일 경과할 것

구비서류(공통)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 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 증명원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td><td>・폐업(예정)자의 유사업종 관련 컨설팅</td></tr>
<tr><td>점포철거비
지원</td><td>・자가 소유건물, 무상임차점포, 주거목적 건물
・비영리사업자
・자력철거(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전문업체 이용필요)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동일장소 재창업
・본 사업 또는 지자체 유사사업 기 수혜자

구비서류(추가)
〈신청 시〉
① 임대차계약서
② 건축물대장
③ 영업신고증
〈정산 시〉
① 폐업사실 증명원
② 공사내역서
③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
④ 이용대금명세서
⑤ 통장사본
⑥ 철거 전·후 사진</td></tr>
<tr><td>폐업
법률자문</td><td>(없 음)</td></tr>
<tr><td>채무조정
신청지원</td><td>(없 음)

구비서류(추가)
①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신청시 등 일부 경우에만)</td></tr>
</tabl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사업정리 컨설팅이나 점포철거비 지원 서비스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원불가 사유가 일부 존재한다.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 서비스의 경우, 임차 사업장의 원상복구의무 이행을 지원하려는 사업취지상 자가 소유건물이나 무상임차건물, 동일장소 재창업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업자 등록된 전문철거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등도 지원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 다만, 이들 지원불가 사유는 건물의 임대형태, 철거방식, 폐업 여부 등 단순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자가 번거로운 신청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신청 전에 체크리스트나 간단한 상담 등을 충실히 활용하였다면 사전에 본인의 지원제외 해당 여부를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2024년 집행 결과 전체 신청자의 최대 30% 가량이 신청 이후 과정에서 탈락하고 있다. 지원불가 사유가 가장 많은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전체 42,042건 신청 중 12,509건(29.8%)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며, 별다른 지원불가 사유가 없는 사업정리 컨설팅에서도 42,849건의 신청 중 7,124건(16.6%)가 탈락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주된 탈락사유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신청이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 사정에 따른 신청철회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탈락자가 발생한 점포철거비 지원 서비스의 경우 탈락자(12,509건)의 52.2%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등 자격요건 미흡으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2024년도 기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서비스 내용]

(단위: 건, %)

서비스	신청(A)	선정	탈락(B)	B/A
사업정리 컨설팅	42,849	35,725	7,124	16.6
	(주요 탈락사유) 지원제외 대상(제외업종, 사업운영기간 60일 미만 등), 개인 사정(연락두절, 단순 변심 등)			
점포철거비 지원	42,042	29,533	12,509	29.8
	(주요 탈락사유) 지원제외 대상(제외업종, 주거용도 건축물 등), 서류 미보완, 개인 사정(철거 미진행, 단순 변심 등)			
폐업 법률자문	3,420	2,860	560	16.4
	(주요 탈락사유) 신청 취소, 자격 미달, 서류 미보완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는 신청과정에서 사전 절차인 체크리스트 또는 상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원스톱 폐업지원을 포함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청 전 충실한 체크리스트 활용이 중요한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체크리스트는 신청자들이 스스로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예컨대 상당수의 질문이 공고문 상의 자격요건을 질문 형식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 체크리스트 응답이 공고문을 해석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소상공인 여부 등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안내 없이 모집공고의 별첨자료를 참고하라고만 적시하여 체크리스트가 사실상 신청요건에 대한 사전 판별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그 결과 체크리스트에서 틀린 답을 체크하면 신청서 입력 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당수의 신청자들이 해당 여부를 알기 어려워 체크리스트 단계에서는 정답을 골라 일단 신청한 후, 나중에 지원요건 미해당으로 탈락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 중인 점포철거비 지원 서비스의 체크리스트 문항 사례]

체크리스트 문항	비고
3. 점포철거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됩니까? ※ 주된 사업의 평균매출액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모집공고 별첨 1)에 이하이며 상시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됨	[예]를 선택해야 신청가능
4.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무상임차인 경우 지원 불가	[아니오]를 선택해야 신청가능
5. 자가 소유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자가 소유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불가	[예]를 선택해야 신청가능
6.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까?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불가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모집공고 별첨2)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부동산 등)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아니오]를 선택해야 신청가능

자료: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발췌(http://www.sbiz.or.kr/)

○ 한편 필요한 신청서류가 무엇인지 목록을 체크리스트 작성 전에 미리 일람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체크리스트 작성시 요구하는 정보는 신청서류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신청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며 체크리스트 작성 중에 새로운 서류가 필요하게 되면 해당 서류를 다시 발급받는 과정에서 신청에 불편함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체크리스트 작성 전에 미리 필요한 필수서류 목록을 제공하고, 체크리스트 작성 시 해당 정보는 필수서류에 어디에 있음을 명시하여 정확한 사전검토가 되도록 한 후, 필요한 추가서류가 있다면 체크리스트 작성 후 별도로 안내한다면 신청 소상공인 개인의 신청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신청 절차를 추가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업운영기관인 공단 입장에서도 신청 후 선별 과정에서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 개인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쉽게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거나 간편 상담기회를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개인의 신청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향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 국회예산정책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 2025.7.) –

가. 현 황

○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도 계획현액 170억원 중 4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5억 1,000만원을 이월하고 32억 4,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4회계연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결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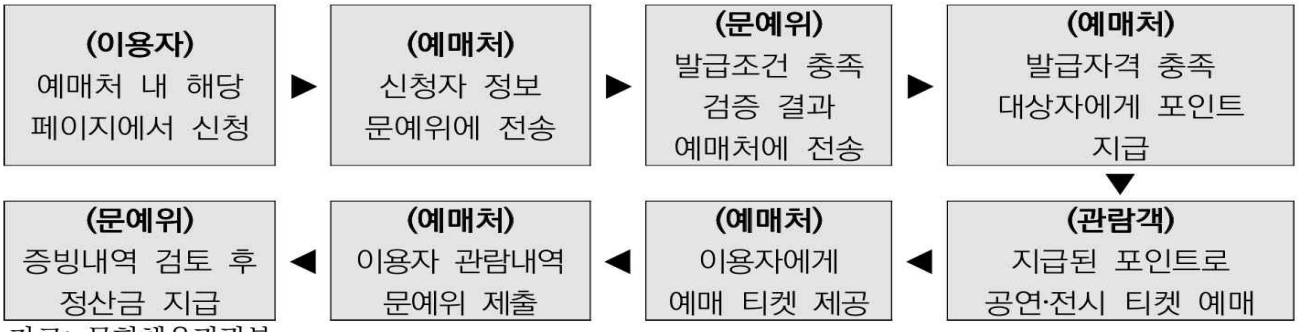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문화예술향유지원	275,149	274,544	-	274,544	261,574	9,510	3,460	280,581
청년문화예술패스	17,000	17,000	-	17,000	4,240	9,510	3,249	17,000

주: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2,806억원이나 제2회 추경예산은 2.906억원으로 증액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동 사업은 2024년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 예매처(인터파크, YES24)에서 신청을 하면 발급조건 충족 여부 검증 후 해당 예매처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지급되고, 이용자는 지급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공연 · 전시 티켓을 예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운영체계(2024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2024년에 신규로 추진되었으나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던바 이는 공연·전시 인프라 및 접근성 부족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5년에도 집행 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16만명에게 각 1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패스 지원금 160억원과 사업운영비 10억원의 총 170억원이 편성되었다.

○ 그런데 동 사업은 2024년 예산액 170억원 중 42억 4,000만원을 집행(집행률 24.9%)하였으며,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지원금(160억원)의 집행액은 33억 5,400만원으로 집행률이 21.0%에 불과한바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3월 말에야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을 개시하게 되어 이용기간이 부족하였으며, 첫해 발급률은 79.8%로 무난한바 미발급분에 해당하는 예산 잔액은 불용처리하였고, 기발급 이용자의 충분한 이용기간 확보를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2024.12.31.까지 → 2025.2.28.까지)함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사업 첫해로 준비기간이 부족하였던 것만을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2025년에도 집행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

○ 먼저, 동 사업 집행이 부진하였던 주요 원인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발급 및 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발급인원은 12만 7,706명으로 예산상 지원인원(16만명)의 79.8% 수준이나, 발급인원 대비 사용인원의 비중은 55.4%, 발급포인트 사용률은 41.7%로 발급자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및 사용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예산상 지원인원 (A)	발급인원 (B)	발급률 (B/A)	사용인원 (C)	발급자 사용률 (C/B)	발급포인트 (D)	사용액 (E)	발급포인트 사용률 (E/D)
160,000	127,706	79.8	70,779	55.4	12,771	5,332	41.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그런데 2024년 3월 말에 발급을 시작한 후 같은 해 4월 말 기준 누적 발급률은 이미 59.6%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바우처를 이용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발급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월별 발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누적발급인원	69,576	95,408	100,808	104,982	109,963	115.304	117,956	120,401	127,706
발급인원	69,576	25,832	5,400	4,174	4,981	5,341	2,652	2,445	7,305
누적발급률	43.5	59.6	63.0	65.6	68.7	72.1	73.7	75.3	79.8
발급률	43.5	16.1	3.4	2.6	3.1	3.4	1.6	1.6	4.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또한, 발급이 3월말부터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2025년 2월까지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간 추가 사용액은 8억원으로 잔여 발급포인트(81억원)의 9.9%에 불과하였으며, 그 결과 2024년 이월액 95억 1,000만원 중 22억 1,100만원(23.2%)만이 집행되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첫해로 발급 개시가 늦어진 점 외에도 청년들의 관람 의사가 있는 전시·공연이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집행 부진의 주된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이용자 또는 사업대상(2005년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주된 사유가 ① 향후 보고싶은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 하려고(아직 보고싶은 공연·전시가 없어서),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③ 거주 지역에 관람 가능한 공연·전시가 없어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사업 첫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청년들의 문화소비 촉진과도 연결되므로, 청년 대상 공연·전시 발굴 및 홍보 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스스로 2024년 예산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3월 말부터 발급이 개시되어 이용기간이 부족하였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역시 3월 말부터 개시된바, 올해에도 패스 이용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

○ 이처럼 2025년 패스 발급이 지연된 것은 2024년에 동 사업에서 추진하였던 중앙관제시스템 고도화가 연내 완료되지 못하고 2025년 2월 말에 개발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 중앙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급 및 지원금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예매처와의 실시간 연계기능을 통해 기존에 협력예매처 사이트 내에서 발급하였던 패스를 전용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지자체 매칭 지원금을 비롯한 포인트 사용내역 등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해당 용역은 2024년 7월 23일 공고 후 9월 11일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2025년 1월 19일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가장 중요한 공정인 '예매처 및 발급자 검증에 필요한 실시간 연계 기능 개발'이 지연되어 2025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개발을 완료하게 되었다.

○ 즉, 2024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시스템 개발 사업이 연내 정상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도 지연된 것으로, 이는 동 사업의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4년 동 사업의 집행 부진은 공연 · 전시 인프라 및 접근성 부족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며, 2025년에도 집행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동 사업은 이월을 통해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업기간을 2025년 2월까지 연장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사고이월의 요건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2024년 예산액 170억원 중 95억 1,000만원(55.9%)을 차년도로 이월하였다. 구체적인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① 중앙관제 시스템 고도화 용역 계약 잔금 9,000만원, ② 2024년 전체 발급인원 127,706명에 대한 국비 지원금 중 2024년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 9,416백만원, ③ 이용기간 연장에 대한 사업안내 등 필수 홍보비용 4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이월내역 및 이월액에 대한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집행내역	
		세부내역	금 액
중앙관제시스템 고도화 용역 잔금	90	잔금 지급	90
2024년 발급자에 대한 국비지원금 집행잔액	9,416	2024.12월 사용분 협력예매처 지원금 정산	1,317
		2025.1월 사용분 협력예매처 지원금 정산	326
		2025.2월 사용분 협력예매처 지원금 정산	474
		소 계	2,117
홍보비	4	첫 예매 이벤트 상품 구입 (전액 미사용자 대상)	0.9
		전액 사용 이벤트 상품 구입 (전액 사용자 대상)	2.7
		지역별 공연·전시 안내 페이지 이용료(2개월)	0.4
		소 계	4
합 계	9,510	합 계	2,21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월액의 대부분은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이용기간 연장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단년도 사업으로서 연내에 발급 및 이용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나, 문화예술위원회는 기발급 이용자의 충분한 이용기간을 확보하고 이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을 2025년 2월까지 연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비지원금 집행잔액과 홍보비를 이월하였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기간 연장 및 이월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가재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의 이월을 금지하되 법률에서 명시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작성 및 송부한 이월명세서에 따르면 동 사업 예산의 이월은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근거로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고이월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 이월금 중 중앙관제 시스템 고도화 용역 계약 잔금(9,000만원)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계약 체결)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로 볼 수 있고, 2024년 12월에 사용된 지원금 정산을 위한 이월금(13억 1,700만원)도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포인트 사용)는 이루어졌으나 연내에 정산을 완료할 수 없는 사정상 사고이월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국비지원금 집행잔액 및 홍보비 이월금의 경우 2024년에 포인트 사용 등의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비이므로, 통상적인 사고이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의결'과 '사업의 시행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용기간 연장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결재를 득한 것'을 지출원인행위로 해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그러나「국가재정법」에서 사고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연도 내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의무가 발생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바, 그 요건이 되는 지출원인행위는 계약 체결 등 지출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기획재정부 또한 '지출원인행위'를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②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연장 결정을 사고이월의 요건이 되는 지출원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 또한, 사업 연장 결정이 난 시점에서는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바 사고이월이 가능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사업기간 연장 결정 자체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 이러한 사업방식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모든 사업에서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기발급자의 이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바우처 사용실적을 제고하고자 사업기간을 연장한 취지는 긍정적이나,「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사고이월의 요건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동 사업은 사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범위를 대중음악 콘서트 및 페스티벌 등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는 순수예술 이용을 촉진하고자 한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 당초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할 수 있는 공연 장르는 연극 · 뮤지컬 · 클래식 · 오페라 · 발레 · 무용 · 합창 · 국악 · 전시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문화예술위원회는 패스 사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4년 11월 21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범위에 음악 콘서트 및 음악 페스티벌을 추가하였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가능 장르 변경 내역]

기존(~2024.11.20.)	변경(2024.11.21.~2025.5월말 현재)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합창, 국악, 전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합창, 국악, 전시 **+ 음악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는 보고싶은 공연 / 전시가 없는 것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주요 사유 중 하나인 것을 감안하여, 청년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장르를 사용범위에 추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 그러나 당초 동 사업은 "순수예술(공연 ·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여 순수예술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할 때, 문화예술위원회가 집행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범위를 대중음악 콘서트까지 확대한 것은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 이에 대해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작은영화관, 대중음악 등 이용 범위를 넓힐 것' 이라는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대중음악 콘서트 · 페스티벌이라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공연 관람 행위 자체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향후 문화예술활동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그러나 K-POP 콘서트 등에 대한 지원은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출하였을 비용을 국고 지원으로 대체하게 되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순수예술이 아닌 대중음악까지 국가재정을 활용하여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므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범위를 대중음악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순수예술을 대상으로 편성되었던 2024년도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 따라서 향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 편성 시 사업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사용범위 확장을 추진할 경우에도 집행 과정에서 이를 변경하기보다는 당초부터 예산안에 반영하여 사업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로,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장르별 이용현황에 따르면 대중음악 콘서트를 사용범위에 추가함에 따라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이용실적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공연 성수기인 연말이 지난 후 2월에는 콘서트에 대한 이용실적 및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바, 이용실적 추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중음악 포함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장르별 이용 현황]

(단위: 천원, 건)

구분	3~10월(월평균)		11월		12월		1월		2월	
	이용금액	이용건수	이용금액	이용건수	이용금액	이용건수	이용금액	이용건수	이용금액	이용건수
뮤지컬	279,741 (63.2)	3,255 (41.0)	786,446 (50.6)	8,499 (41.6)	937,871 (52.6)	9,997 (39.1)	297,722 (57.3)	3,254 (40.4)	424,943 (70.9)	4,510 (46.4)
연극	54,603 (12.3)	1,973 (24.8)	102,568 (6.6)	3,741 (18.3)	164,894 (9.2)	5,682 (22.2)	49,239 (9.5)	1,894 (23.5)	79,522 (13.3)	2,785 (28.6)
전시	22,999 (5.2)	1,516 (19.1)	30,496 (2.0)	1,702 (8.3)	71,633 (4.0)	3,313 (12.9)	26,499 (5.1)	1,328 (16.5)	35,404 (5.9)	1,649 (17.0)
콘서트[1)]	**113 (0.0)**	**3 (0.0)**	**391,219 (25.2)**	**3,317 (16.3)**	**367,076 (20.6)**	**3,388 (13.2)**	**118,018 (22.7)**	**1,119 (13.9)**	**23,749 (4.0)**	**227 (2.3)**
클래식/ 무용/국악	85,219 (19.3)	1,192 (15.0)	243,192 (15.7)	3,149 (15.4)	242,689 (13.6)	3,206 (12.5)	28,131 (5.4)	453 (5.6)	36,017 (6.0)	551 (5.7)
합 계	442,675 (100.0)	7,940 (100.0)	1,553,920 (100.0)	20,407 (100.0)	1,784,163 (100.0)	25,586 (100.0)	519,610 (100.1)	8,048 (100.0)	599,635 (100.0)	9,722 (100.0)

주: 1) 3~10월까지의 콘서트 이용 건은 일부 클래식 콘서트 등이 콘서트 장르로 집계된 것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넷째, 동 사업 수혜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비 매칭 및 지역별 공연·전시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은 아니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지방비(인당 5만원)를 매칭한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방비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자들은 본인의 주소지가 속한 지자체에서 지방비 편성이 된 경우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 그런데 각 지역별로 지방비 매칭 여부 및 시기가 상이하여 동 사업의 실질적인 혜택에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2024년 지방비 매칭 협약 체결 및 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160개 대상 지자체 중 상반기까지 지방비 위탁이 완료된 지역은 27개에 불과하였고, 43개 지역은 4분기에야 지방비 위탁이 완료된바 해당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사용에 제약이 있었으며, 5개 지자체는 지방비 매칭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당 지역 청년들은 지방비를 통한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분기별 지방비 매칭 협약 체결 및 위탁 현황]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매칭 협약 체결	1개 지역	104개 지역	23개 지역	27개 지역
지방비 위탁	-	27개 지역	85개 지역	43개 지역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2025년의 경우 6개 지역14)에서 지방비 매칭 미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3월말 기준 제주도, 충청남도 및 전남 강진에서 지방비 위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 전년과 비교할 때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의 지방비 위탁은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매칭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의 수가 늘어난바, 전지역 청년에게 고르게 동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2024년 지역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발급 포인트 대비 사용액이 높은 상위 지역(서울 50.0%, 인천 47.3%, 세종 47.3%)과 하위 지역(제주 31.8%, 전남 32.6%, 전북 34.8%)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각 지역에 배정된 국비 지원금 인원 대비 발급인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발급포인트 대비 사용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배정인원 대비 발급률(서울 100%, 세종 91.8%, 인천 89.3%)도 가장 높았던 반면, 전북 56.2%, 제주 59.1%, 대전 64.4% 순으로 발급률이 낮아 그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발급인원 대비 사용인원도 서울 62.4%, 인천 60.4%, 경기 58.8%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높았으며, 하위 3개 지역은 전남 44.2%, 전북 44.6%, 제주 44.7%로 발급포인트 대비 사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2024년 지역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 배정 및 사용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배정인원 (A)	발급인원 (B)	발급률 (B/A)	사용인원 (C)	사용률1 (C/B)	발급포인트 (D)	사용액 (E)	사용률2 (E/D)
상위 3개 지역	서울	25,895	25,895	100.0	16,162	62.4	3,884	1,941	50.0
	인천	9,221	8,231	89.3	4,970	60.4	1,235	584	47.3
	세종	1,477	1,356	91.8	770	56.8	203	96	47.3
강원		4,726	3,749	79.3	1,965	52.4	562	216	38.4
경기		44,268	36,946	83.5	21,732	58.8	5,284	2,362	44.7
경남		10,715	6,973	65.1	3,400	48.8	1,046	384	36.7
경북		7,730	5,268	68.2	2,478	47.0	790	280	35.4
광주		5,200	3,802	73.1	1,917	50.4	570	219	38.4
대구		7,586	5,670	74.7	2,963	52.3	851	354	41.6
대전		4,853	3,126	64.4	1,494	47.8	313	121	38.7
부산		8,925	6,022	67.5	2,970	49.3	903	343	38.0
울산		3,708	2,418	65.2	1,107	45.8	363	128	35.3
충남		6,834	4,782	70.0	2,542	53.2	717	288	40.2
충북		4,984	3,380	67.8	1,825	54.0	507	207	40.8
하위 3개 지역	제주	2,374	1,404	59.1	628	44.7	211	67	31.8
	전남	5,549	4,337	78.2	1,916	44.2	651	212	32.6
	전북	7,730	4,347	56.2	1,940	44.6	564	196	34.8
합계		160,000	127,706	79.8	70,779	55.4	18,654	7,998	42.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처럼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사용률 및 발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연 · 전시 인프라 등 지역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관람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제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지역에서 매칭 지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공연 · 전시 인프라 취약 지역 청년에게 보다 폭넓은 관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다섯째, 동 사업은 포인트 지원을 위한 예산 160억원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수용비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동 사업은 2024년에 16만명의 청년에게 각 10만원씩의 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 160억원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에도 동일하게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다.

○ 그러나 이는 청년들에게 공연 ·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비용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성격의 비용이므로, ① 사무용품 구입비, ② 인쇄비 및 유인비, ③ 안내 · 홍보물 등 제작비, ④ 소모성 물품 구입비, ⑤ 간행물 등 구입비, ⑥ 비품 수선비, ⑦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⑧ 공고료 및 광고료, ⑨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⑩ 의무실 · 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 ·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⑪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⑫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를 위해 편성하는 일반수용비(210-01목)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이 아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접 운영 사업이므로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즉, 일반회계 등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동 사업을 운영하였을 경우 통상의 바우처 사업 등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 수행하는 민간경상보조(320-01목) 사업으로 편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동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편성된 사업으로 해당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므로 기금 관리·운용 주체가 스스로 운영하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할 수 없고 그 밖에 동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적절한 비목이 없어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동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는 것 또한 그 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 사업과 같은 성격의 민간 이전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비목을 신설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 (2024년 결산 분석 / 2025.7.)

가. 현 황

○ 교육부 소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전체 특별교부금 중 60%의 비중을 차지하며, 2024년 예산 기준 1조 2,009억원 규모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 및 2025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르면,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은 초·중등 분야 주요 정책사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가책임 교육·돌봄 지원, 디지털 교육혁신 지원,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 교육복지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교육행정 지원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교부하고 있다.

○ 참고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과 유사한 성격인 행정안전부의 국가지방협력수요 특별교부세 비중은 10%이며 2024년 예산은 1,851억원 규모로 교육부 소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15.4% 수준이다.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당초 예산]

(단위: 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부)			지방교부세(행정안전부)		
사업명	산출식	예산	사업명	산출식	예산
보통교부금	내국세 20.79% 중 97%	735,334	보통교부세	내국세 19.24% 중 97%	598,439
특별교부금	내국세 20.79% 중 3.8%	22,272	특별교부세	내국세 19.24% 중 3%	18,508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60%	**12,009**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의 10%	**1,851**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30%	6,004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의 40%	7,40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10%	2,001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의 50%	9,254
디지털교육혁신	내국세 20.79% 중 0.8%	5,333			

자료: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2024년 기준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은 30개 단위사업 및 127개 내역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국가시책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내역사업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로 1,559억 3,100만원이다. 전체 사업 중 신규사업은 34개 내역사업에 4,779억 800만원이며, 그 중 디지털 교육혁신 관련 사업과 유보통합 관련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주요 사업(예시)]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액	'24년 신규
늘봄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155,931	신규
	늘봄학교 운영 체제 구축	39,488	
유보통합	유보통합 시범운영	20,377	신규
	유보통합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후속 조치	3,740	신규
기초학력보장	기초학력 보장 지원	121,239	
	책임교육학년 지원	52,800	신규
디지털 기반 구축	디지털 교육 활성화 지원	108,151	신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47,281	신규
디지털교과서 개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지원	7,999	신규
	AI 디지털교과서 공동활용콘텐츠 지원	4,600	신규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25,870	
학폭대응	학교폭력 신고·사안처리 및 화해·분쟁 조정 지원	41,347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 **첫째,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운용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상 교육부가 중심이 되는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예산을 결정하고 있으며,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상 한계로 인해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에 일부 제약이 따르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예산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은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나, 특별교부금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예산이 1.2조원 규모에 달하는 등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분야이다.

- 그러나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운용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상 교육부가 중심이 되는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예산을 결정하고 있으며,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상 한계로 인해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에 일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 확정 절차를 살펴보면, 교육부 각 사업별 주관 부서에서 제출한 국가시책사업에 대하여 교육부 내 '국가시책사업심의회'(現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에 부의하고, 심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사업별 예산을 확정·통지하는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 즉, 일반 예산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정부안 확정 및 국회의 심의를 통한 의결 절차 등을 통해 사업 내용 및 예산 규모가 결정되지만, 국가시책특별교부금 교부 대상사업은 국정과제 등 정부의 교육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가 사업과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특징이 있다.

[국가시책사업 확정 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추진내용
사업신청	교육부 사업부서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수요 발생 시 신청
⇩		
사업심의	국가시책사업심의회 (現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국가시책사업 관련 심의
⇩		
확정교부통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교부 통지
⇩		
집행 및 결과보고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교육부 사업부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및 결과보고

주: 2025년부터 국가시책사업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교부금위원회로 개편되었음
자료: 교육부

- 세부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부서 실무자 협의(1차), 부서과장 예산조정(2차), 실국장 주재 예산조정(3차), 차관 주재

주요사업 조정을 거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국가시책사업심의회(現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에 상정할 교부금 지원 계획(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안은 2024년 기준 외부위원이 과반(13인 중 9인)인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국가시책사업 운영 등에 반영된다.

- 특히,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르면 외부위원 요건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또는 3급 이상 지방공무원(장학관 포함),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 그 밖에 교육행정 및 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2024년 기준 실제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외부위원 중 시·도교육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부교육감 및 교육정책국장 등 2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부교육감의 제청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바, 사실상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국가시책사업심의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교부금의 집행기관인 시·도교육청의 여건이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외부위원 중 7명이 부총장 및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중등 교육 관련 실무 현장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교육청 교육장이나 소속 지방공무원 등 실무현장 경험자 및 교육행정 전문가의 참여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더해, 국가시책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은 일반 예산사업과는 달리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타당성,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의회의 검토·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그러나 2024년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시책사업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총 13인의 위원 중 8인만 참여하는 등 참석이 부진하였고, 3~4차 심의의 경우에는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등 국가시책사업 예산 규모에 비해 심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로, 최근 4년간(2021~2024년) 심의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15차례의 심의 중 수정의결은 2차례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업이 교육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 국가시책사업심의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로 확대·개편하면서, 기존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4인 및 외부위원 9인 등 총 13인이 심의회에 참여하였으나, 외부위원을 19인으로 확대하고 교육청, 단위학교, 교육감협의회 추천인 등 교육현장 전문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다양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심도 있는 국가시책사업 심의를 위해 2026년 1차 심의회('25.9월 개최 예정)부터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 사전 검토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며,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현장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예산 결정과정 및 구조상 국회나 외부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통제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부는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예산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교육부는 매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4년 추진된 사업 체계 개편으로 인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과정에 적절히 환류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3조의26)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173호) 등에 근거하여 초·중등 분야 주요 정책사업을 포괄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을 경우 해당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D~E등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차년도 예산 편성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감액 또는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2024년 12월 발표된 “2024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가시책사업 총 82개 중 ‘D등급(미흡)’과 ‘E등급(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사업이 29개로 전체 사업 대비 3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84.1%)이 보통 이하의 등급을 부여받은 등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건, %)

구 분		A등급 (매우우수)	B등급 (우수)	C등급 (보통)	D등급 (미흡)	E등급 (매우미흡)	전체
평가점수		90점 이상	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60점미만**	-
사업수	일반사업	1	12	38	**21**	**4**	76
	정보화사업	0	0	2	**2**	**2**	6
	소계	1	12	40	**23**	**6**	82
비중		1.2	14.6	48.8	**28.0**	**7.3**	100.0

주: 2023년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2024. 12.

- 이와 같은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도 국가시책사업 중 성과가 미흡한 D~E등급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2025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예산 편성 시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9월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면서 2024년부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운용체계를 ‘세부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개편하였고, 유사사업 통폐합, 시·도교육청 이양, 지원 중단 등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 기준 총 82개 세부사업 및 166개 내역사업에서 2024년 기준 30개 단위사업으로 사업 수를 대폭 감축하였다.
- 이러한 사업 운용체계 개편으로 인해 2024년 진행된 성과평가(2023년 추진사업 대상) 결과에 기반한 감액 등 조치사항이 2025년 국가시책사업 예산 편성 시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비록 학교 단위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 예산의 결정과정이 교육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부통제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과정에 적절히 환류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총　　괄　이 정 표 | 입법정책담당관

기획검토　형 영 주 | 자치현안지원팀장

작　　성　김해빛찬 | 자치현안지원팀
송 지 영 | 자치현안지원팀
설 재 영 | 자치현안지원팀
윤 여 성 | 자치현안지원팀
송 다 원 | 자치현안지원팀
권 영 두 | 자치현안지원팀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의회